

관세연구 14 - 04

# 주요국의 우회덤핑방지제도 비교 연구

2014. 12

세 법 연구 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연구진

### 연구책임자

정 재 호 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이 민 선 관제사

양 지 영 연구원

# 목 차

I. 서론	7
II. 우리나라의 반덤핑제도와 WTO에서의 논의	9
1. 우리나라의 반덤핑제도	9
가. 반덤핑제도의 개요	9
나. 관세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10
다. 반덤핑 조사절차	12
2. WTO에서의 반덤핑 논의	14
가. 개요	14
나. 주요 회원국들의 입장	15
다. 개정 진행상황	16
라. 반덤핑협정 개정의 주요 쟁점사항 및 우리나라의 입장	17
3. 우회덤핑방지(Anti-circumvention)제도	24
가. 개요	24
나. 우회덤핑방지규정에 관한 국제 논의	25
다. 우리나라의 우회덤핑방지	31
III. 주요국의 우회덤핑방지 규정 및 운영현황	35
1. 미국	35
가. 우회덤핑규제 대상 유형 및 요건	35
나. 우회덤핑판정 절차	39
다. 우회덤핑 사례	42
2. EU	44

가. 우회덤핑의 정의.....	45
나. 우회덤핑규제 대상 유형.....	47
다. 우회덤핑방지조치 부과 요건.....	49
라. 우회덤핑판정의 절차.....	51
마. 마우회덤핑 사례.....	52
3. 호주.....	53
가. 우회덤핑의 유형.....	53
나. 우회덤핑 조사.....	54
4. 인도.....	58
가. 우회덤핑행위의 유형 및 요건.....	58
나. 우회덤핑 조사.....	59
5. 중국.....	61
가. 우회덤핑행위의 유형 및 요건.....	62
나. 우회덤핑 사례.....	63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64
1. 국제비교.....	64
가. 개요.....	64
나. 우회덤핑의 유형 및 요건.....	64
다. 우회덤핑판정 절차.....	67
2. 시사점.....	69
가. 정책 방향.....	70
나. 우회덤핑방지 규정 측면.....	72
참고문헌.....	75

## 표목차

〈표 III-1〉 EU의 우회덤핑 유형(1995~2012).....	49
〈표 IV-1〉 우회덤핑 유형 및 요건 국제비교.....	66
〈표 IV-2〉 우회덤핑판정 절차 국제비교.....	68

## 그림목차

[그림 Ⅲ-1] 신청서 양식(B1236).....	56
[그림 Ⅲ-2] 호주의 우회덤핑판정 절차.....	57

# I. 서론

- WTO에 우회덤핑방지(anti-circumvention)와 관련되어 상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미국, EU, 호주 등 국가 일부 국가는 이미 우회행위가 발견된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규정 일체를 구비하고 있음
  - 이들 국가에서는 자국의 반덤핑법의 적용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우회덤핑으로 규정하여 규제하고 있음
  
- UR협상 과정에서 각국의 심각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후속협상 과제로 되어 1995년부터 협상이 진행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임
  - UR협상 당시 미국, EU 등 수입국의 입장에 있는 국가들은 우회덤핑방지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적극적이었으나, 우리나라는 일본 등과 함께 수출국의 입장에서 동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여 각국은 스스로 처한 입장에 따라 우회덤핑제도를 보는 시각에 많은 차이를 보여 왔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산 일회용라이터<sup>1)</sup> 및 대만산 CD-R(Compact Disk Recordable)<sup>2)</sup> 등의 덤핑조사 중 우회덤핑이 발생하였으나 법적 제재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적절한 대응을 못한 사례가 있음
  - 이와 관련, FTA 체결을 통하여 변화하는 통상환경하에서 공세적 통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우회덤핑방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음

---

1)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인 중국산 라이터를 말레이시아산으로 위장해 수입한 사례(2005년)

2) 대만산 CD-R을 중국 등 제3국으로 우회수입하면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수법으로 덤핑방지관세를 포탈한 사례(2003년)

- 즉, 그간 DDA협상의 맥락에서만 반덤핑협정의 개정을 바라보았던 우리나라의 시각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는 시점
-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WTO에서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다자간 체제가 아닌 현재의 FTA 환경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을 수 있음
  - 우리나라는 그동안 우회덤핑방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었으나 중국 및 인도 등 개도국이 우리나라를 통해 우회수출을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한-미 FTA 및 한-EU FTA 협상과정에서부터 논의되었고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는 반덤핑과 우회덤핑방지규제에 관한 각국 정부의 입장이 대립하는 현 상황에서 미국과 EU, 호주 등 주요국의 구체적 규정 및 일부 사례를 통해 우회덤핑방지제도의 내용 및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관세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미국과 EU, 호주, 인도, 중국의 우회덤핑방지제도를 살펴보고자 함
-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Ⅱ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반덤핑제도와 우회방지와 관련된 GATT와 WTO에서의 논의과정을 검토하고,
  - 제Ⅲ장에서는 실제 국내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 EU, 호주, 인도, 중국의 우회덤핑방지제도의 내용 및 일부 사례를 살펴본 후,
  - 제Ⅳ장에서 이들 국가들의 제도를 비교하고, 우회덤핑방지규정이 미비한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함

## II. 우리나라의 반덤핑제도와 WTO에서의 논의

### 1. 우리나라의 반덤핑제도

#### 가. 반덤핑제도의 개요

- 덤핑(Dumping)이란 GATT 협정 제6조에서 정의되고 있는 개념으로 동종물품의 수출 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낮은 경우를 의미함
  - 덤핑은 원가 이하의 판매를 의미하는 경제학상의 부당 매매와는 다른 개념임
  
- 덤핑을 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임
  - 수입국시장에서 경쟁기업을 무너뜨려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한 약탈적 덤핑(predatory dumping)이 있음
  - 새로운 시장접근을 위해 수출 초기에 시장개척 차원에서 행하는 시장확장적 덤핑(market expansion dumping)이 있음
  - 기타 외화획득이나 재고처분 목적의 덤핑으로 구별할 수 있음
  
- 반덤핑제도는 GATT 1994 제6조 및 WTO 반덤핑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GATT 1994)에 근거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무역위원회가 덤핑 여부를 판정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부과조치를 건의하는 형태로 되어 있음
  - 미국의 경우 상무성(DOC)에서 덤핑마진 조사를, 무역위원회(ITC)에서 산업피해조사를 담당하며, 이러한 기관의 결정에 불응시 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제소 가능

- EU는 집행위원회(EU Commission)가 실질적인 담당기관이며 절차상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를 경유하도록 하고 있음
    -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시에는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 가능
  - 일본은 재무성에 반덤핑과세를 요구하여 경제산업성에서 조사
  -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덤핑마진조사기관과 산업피해조사기관이 일원화되어 있음
- 이에 따라 반덤핑 조치는 수입국이 수출국의 덤핑으로 인한 수입국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제도임

#### 나. 관세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sup>3)</sup>

- GATT 제6.1조와 제6.2조 규정, 그리고 WTO 반덤핑협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덤핑 관련 국제규범을 국내에서도 이행하기 위해 관세법과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등에 그 규정을 반영하고 있음<sup>4)</sup>
- 이들 법률 하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두어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규범을 제시함
-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제51조 내지 제56조에서 덤핑방지관세에 대해 따로 명시하고 있음
- 덤핑(Dumping)은 수출자가 수출국의 국내시장에서 판매되고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인 정상가격(Normal Value)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함
    -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이유는 수출국의 시장점유율을 높이면서 동종물품의 경쟁자를 제거하여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3) 정재호·이재민,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제도 활용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12, pp. 24~26

4) 정재호·이재민,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제도 활용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12, p. 24

1) 관세법 제51조

- 「관세법」 제51조에서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을 명시하고 있음
  -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국내 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되는 등의 실질적 피해 등이 확인되고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시

2) 관세법 제52조

- 「관세법」 제52조에서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에서 수행함

3) 관세법 제53조

- 「관세법」 제53조에서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이전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추계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
  - 잠정조치가 가능한 경우는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와 덤핑을 제거하기 위한 가격의 수정, 덤핑수출 중지 등의 약속을 위반하거나 약속이행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등

#### 4) 관세법 제54조~제56조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며 5년 동안 효력이 인정되고 5년이 지난 이후에는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여 결정함
- 덤핑판정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덤핑판정이 난 경우에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 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이 이행되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이것은 단지 문제의 조사를 합의에 따라 중지하는 것 뿐, 조사를 최종적으로 그리고 종국적으로 종결하는 것은 아님
-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약속의 이행 등에 대해 재심사를 할 수 있음
  -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내용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다. 반덤핑조사 절차

- 반덤핑조사 절차는 크게 덤핑마진조사와 산업피해조사로 나누어 진행함
  - 자격이 있는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한 제소요건에 부합하는지 심사한 후 조사개시를 하여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근거로 무역위원회가 덤핑여부에 대해 판정함
  - 본격적 조사기간은 6개월(예비 및 본 조사 각 3개월)이나, 신청 시부터 최종 덤핑방지관세부과까지는 9개월이 소요됨

### 1) 구체적 조사절차

-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요건을 검토하여 신청서 접수 후 2개월 내에 조사개시 여부 및 조사대상물품, 조사대상기간(덤핑률조사는 통상 1년, 산업피해조사는 통상 3년), 조사대상업체를 확정함
  - 조사대상기간의 경우 덤핑률조사는 통상 1년, 산업피해조사는 통상 3년임
- 예비조사는 조사개시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완료됨
  - 덤핑조사를 위한 질문서를 신청인, 피신청인,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보내고 답변서가 도착하면 이를 분석하며 관계기관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료를 수집함
- 본 조사는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3개월내에 행하게 되는데, 답변서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현지실사를 수행<sup>5)</sup>하게 되며, 현지 실사 후 이해관계자(신청인, 피신청인 등)를 불러 공청회를 개최하여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개진의 기회를 부여함
- 이러한 모든 조사가 종결되면 그 결과를 근거로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 여부를 판정함

### 2) 덤핑마진 산정 및 산업피해 판정

- 덤핑마진이란 국내내수가격과 수출가격과의 차이를 말하는 데, 양 가격을 공정하게 비교하기 위해 동일기간, 동종물품, 판매시점 등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함
  - 양 가격에 운송비 차이, 거래단계 차이, 판매조건 차이 등 각종의 차이를 조정한 후 양 가격을 공장도거래 단계(ex-factory level)로 환원하여 비교함
  - 덤핑마진이 2% 이하인 경우에는 미소마진(de-minimis)으로 덤핑조사를 종결함
- 덤핑마진이 있다고 해도 산업피해가 없으면 반덤핑조치를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산업피해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 실질적 피해우려(a threat of material injury), 국내산업의 설립지연(establishment retard)으로 판단함

---

5) 덤핑률 조사는 해외 현지실사, 산업피해조사는 국내 현지실사

- 이를 위해 생산, 판매, 영업, 고용, 투자, 임금관련 지표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
- 덤핑마진이 존재하고 피해판정이 있으면 통상 이들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어 최종적인 덤핑판정을 받게 됨

## 2. WTO에서의 반덤핑 논의<sup>6)</sup>

### 가. 개요

- 국제적 차원에서 반덤핑조사에 대한 규제는 1947년 GATT 제6조에서 덤핑조사에 대한 일반적인 규율 조항을 포함하면서 시작
- 이를 바탕으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에서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채택하여 모든 GATT/WTO 회원국에서 적용되는 규정으로 확대되어 이 협정을 통상 WTO 반덤핑협정이라고 부름
- 반덤핑 조사제도가 자의적으로 운용되는 사례가 많아 WTO 회원국들은 WTO 반덤핑 협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는 함
  - 현재까지 WTO 반덤핑협정의 개정에 대해 개별 국가별로 다양한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 크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수출에 중점을 두고 있는 회원국과 외국 수입상품에 대한 조사를 주로 진행하는 회원국 간 서로 상반되는 견해를 지지하고 있음
- WTO 반덤핑협정 개정 논의과정에서 다양한 평가와 문제점이 정리되어 있어 반덤핑 협정의 개정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임

6) 정재호·이재민,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제도 활용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12, pp. 37~57

- 또한 우리나라가 여러 나라와 진행 중인 FTA 협상에서 반덤핑분야에서 논의되는 양자간 제반 의제의 중요한 골격을 이룸

## 나. 주요 회원국들의 입장

- WTO 반덤핑협정의 개정을 주도하는 그룹은 크게 4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여러 이슈에 대하여 이들 그룹들은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 각 그룹 내에서도 국가들의 입장은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반덤핑협정에 대한 이해와 각국의 조사당국이 직면하는 현실에는 각각 차이가 있기 때문임

### 1)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5개국<sup>7)</sup>으로 구성된 Friends Group (Friends of Anti-Dumping Negotiation: FANs)

- 반덤핑제도의 실질적인 개정을 통해 반덤핑 조치의 오·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임
- FANs는 반덤핑협정 중에서 개정이 필요한 다수의 이슈들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활발하게 대응함

### 2) 미국

- 반덤핑협정의 개정에 미온적이어서 FANs와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미국은 다른 회원국들을 의식하여 반덤핑협정 개정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였지만 지난 20여 년간 반덤핑 조치를 많이 실시한 국가 중의 하나로 현재의 반덤핑제도를 유지하려는 의도임
- 반덤핑 조치를 많이 실시한 국가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반덤핑 피소도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우회덤핑 금지규정의 도입 등 자국에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반덤핑조사 절차의 개선과 절차의 투명성 등의 사항에 대해서도 개정 의지를 보이고 있음

---

7)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홍콩, 이스라엘, 일본, 한국, 멕시코,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태국, 터키

### 3) EU와 캐나다

- FANs와 미국의 중간 정도의 입장을 보임
  - EU와 캐나다는 반덤핑 조치의 오·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현재의 반덤핑제도를 어느 정도 유지할 필요도 있다는 중간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캐나다는 반덤핑제도를 일찍부터 시행하였으며 EU도 미국처럼 반덤핑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국가로서 반덤핑제도의 개선과 현 제도의 유지 모두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 4) 인도, 인도네시아 등

- 최근 반덤핑제도의 운용에 적극적인 것은 개도국이자 신흥시장국가들임
  - 이들 국가들은 개도국으로서 현재의 반덤핑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정을 개정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개정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함
  - 미국, EU 등 선진국들이 자국에 대하여 반덤핑조치를 실시하더라도 자국도 선진국에 대해 반덤핑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함

## 다. 개정 진행상황

- 2007년 11월에 제시된 의장초안(Chair's text)과 2008년 12월의 수정안을 제시함
  - 2007년 11월에 제시된 의장초안 내용 중에는 회원국들 간에 큰 의견 차이가 없는 사안들도 있었지만 그 중 10여 개는 회원국들 간에 큰 견해 차이를 보이는 핵심 쟁점사항들이었음
  - 의장초안에서 나름대로 10여 개의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였지만 회원국들은 강하게 반대
  - 이러한 반발로 이듬해 2008년 12월에 의장초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제시하여 회원국들 간 의견 차이가 적었던 의제들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조율된 문안을 제시

- 그러나 쟁점이 되었던 10여 개의 의제에 대해서는 2007년 의장초안에서 제시했던 제안을 거의 대부분 철회하고 기존 반덤핑협정의 내용에 논쟁이 존재한다는 수준의 언급만을 추가하여 수정안 제시
  - 2007년에 논쟁이 되었던 사항들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게 된 것
- 이후 현재까지 WTO 규범 협상의 개정 작업은 추가적인 제안 없이 답보상태에 있음
  
- 2010년 의장보고서에서는 2007년 의장초안과 2008년 수정안을 통해 나타난 세부 주요 쟁점사항으로 11가지<sup>8)</sup>를 언급하고 있음
  - 이 쟁점 사항들 중 2007년 의장초안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2007년 초안의 제출에서 언급된 이후 회원국들로부터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이면서 2008년 수정안에서는 철회된 의제들임
  - 이밖에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도 회원국들의 의견 차이가 있음을 표현하고 있음

## 라. 반덤핑협정 개정의 주요 쟁점사항 및 우리나라의 입장

### 1) 제로잉(Zeroing)

- 덤핑마진을 계산할 때 제로잉을 허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덤핑 관련 제소국과 피제소국의 입장이 서로 정반대임
  - 제로잉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간 부과되어 오던 반덤핑관세의 상당 부분은 부과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회원국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임
  
- 현실적으로 덤핑마진을 계산하다 보면, 때로는 정상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낮아 음(-)의 덤핑마진이 발생할 경우가 있음
  - 이런 음(-)의 덤핑마진을 가중평균가격 산정 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가격을 '0'으로 조정하여 덤핑마진을 산정

---

8) 제로잉(Zeroing), 인과관계,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원, 공공이익 및 최소부과 원칙(lesser duty rule), 우회수출방지(anti-circumvention), 일몰재심(sunset review), 국내산업의 정의, 관계사 보유 정보 요청, 고려대상 물품, 미소마진

- 이 경우 전체적인 덤핑마진이 인위적으로 상승하게 되어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최종적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관행을 제로잉이라고 함
  
- WTO 반덤핑협정 제2.1조와 제2.2조에서 정상가격(Normal Value)을 규정하고 있으며 WTO 회원국가들 모두 이러한 조항은 반덤핑규정에 명시하고 있음
  - 수출국 내에서 소비되는 동종 상품에 대한 정상적 거래를 통한 비교가능가격
  - 수출국 내의 정상거래에 의한 동종 상품의 판매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또는 수출국의 특수한 시장상황 또는 판매규모가 소량이어서 적절한 비교의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비교가능한 제3국 수출가격
  - 원산지국에서의 생산비용에 합리적인 금액의 관리비, 판매비, 일반비용과 이윤을 합산한 구성가격
  
- 피제소국에서는 음(-)의 덤핑마진을 제소국 자의적으로 '0'으로 조정하지 말고 음(-)의 덤핑마진 그 자체를 포함시켜 평균마진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함
  - 이럴 경우 덤핑마진이 낮아지기 때문임
  
- 제로잉에 대해 제소국과 피제소국 간의 이해관계가 상반되고 있음
  - 미국 등 반덤핑조치를 빈번하게 취하는 국가들은 제로잉을 사용하여 자국 산업에 대한 덤핑 피해를 구제하는 데 유리한 수단으로 활용함
  - 피제소국 입장에서는 제로잉은 제소국이 자의적으로 덤핑마진을 높이기 위한 자의적인 수단이라는 입장임

## 2) 인과관계

- 반덤핑 부과조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덤핑이 이루어진 사실과 함께 이러한 덤핑으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는지가 입증되어야 함
  - 현행 WTO 반덤핑협정 제3.5조에서는 이러한 덤핑과 산업피해 사이에 대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만 반덤핑 부과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덤핑이 존재하지만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가 없거나 국내 산업의 피해가 덤핑 이외의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면 덤핑과 국내 산업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반덤핑 규제를 할 수 없음
  - 현재 다른 외부요인들에 의한 영향이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덤핑에 의한 피해를 인정할 것인지 등이 문제점으로 등장함
  
- 반덤핑협정 제3.5조에서는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을 명시함
  -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는 수입국의 조사당국이 관련된 모든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에 근거해서 판단되어야 함
  - 추가적으로 덤핑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에 덤핑 이외에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들도 조사당국이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
  - 다른 요인<sup>9)</sup>들이 국내 산업에 미친 피해는 덤핑 판정에서 제외해야 함
  
- 그러나 덤핑과 산업피해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요인들에 의한 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감안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 등은 언급하고 있지 않음

---

9)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지 않은 수입품의 수량 및 가격, 수요 감소 또는 소비형태의 변화, 국외와 국내생산자를 제약하는 무역관행, 국외와 국내생산자 사이의 경쟁관계, 기술발전, 국내 산업의 수출 실적, 국내 산업의 생산성 등

### 3) 국내 산업 확립에 대한 실질적인 지연

- 반덤핑협정 제3조에서는 피해의 판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피해는 국내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국내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 또는 산업의 확립에 대한 실질적인 지연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함
  - 실질적인 피해와 피해의 우려에 대해서는 기준이나 고려요소들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국내 산업 확립의 실질적인 지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
  - 국내 산업 확립의 실질적인 지연을 어느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도 이를 근거로 제시하여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실질적 지연에 대해서는 판단 기준 자체가 불분명하여 실제 반덤핑 판정에서도 국내 산업 확립의 실질적인 지연을 사유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경우도 거의 없음

### 4) 공공이익 및 최소부과 원칙(lesser duty rule)

- 반덤핑협정 제9.1조에서는 조사를 통해 덤핑으로 판정되어 반덤핑관세의 부과요건을 모두 충족시킨 경우 반덤핑관세의 부과 여부 및 세액을 덤핑마진 전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보다 적게 할 것인지는 제소국의 임의판단에 맡기고 있음
  - 다만, 덤핑마진 미만의 관세로도 수입국 내의 산업피해를 제거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덤핑마진 미만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를 하고 있으며 이를 최소부과 원칙이라고 부르고 있음
  - 최소부과 원칙은 덤핑으로 판정된 이후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덤핑방지 관세로 제거할 수 있다면 그 세액의 크기는 덤핑마진과 피해마진 중 작은 수준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원칙을 의미
- 최소부과 원칙은 단지 권고일 뿐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오랜 기간 WTO 회원국들 간 논란이 있었음

### 5) 우회수출(circumvention)

- 반덤핑 조치 시행으로 이런 반덤핑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이 발생하면서 미국 등에서 우회수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음
- 그러나 WTO 반덤핑 협정에서는 우회수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없음
  - 미국에서는 우회수출을 규정하고 이를 제재하고 있어 WTO 규범에 우회수출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자 하는 입장을 강력하게 고수하고 있음
    - 미국은 반덤핑법에서 우회수출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 우회수출은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것도 있지만 비교우위나 차등관세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분업 생산을 하는 것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음
  - 그러나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모호하고 이런 모호함으로 인해 덤핑 조사당국이 자의적으로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데 회원국들은 우려하고 있음
-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에도 회원국 간 논쟁이 치열하였음

### 6) 일몰재심

- 반덤핑관세 부과 종료시점에 대하여 WTO 반덤핑 협정 제11.3조에서 모든 확정 반덤핑관세는 부과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결된다고 원칙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조사당국이 종료일 이전에 덤핑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음
  - 재검토 결과 덤핑이 계속되고 있고 반덤핑관세를 종료할 경우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반덤핑관세의 부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반덤핑관세를 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지속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 따라서 이 규정을 개정하자는 요구가 많은 상황

## 7) 그 밖의 쟁점들

### 가) 국내 산업의 정의

- 반덤핑 조치에서 국내 산업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임
  - WTO 반덤핑협정 제4조에서는 국내 산업을 동종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 전체 또는 이들 중 생산량의 합계가 당해 상품의 국내 총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점하는 국내 생산자들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국내 생산자가 덤핑물품의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관계가 있거나 생산자 자신이 덤핑물품의 수입자인 경우에는 국내 산업은 그 나머지 생산자를 지칭
    - 국내 생산자가 덤핑물품의 수출입자와 관계가 있거나 당사자인 경우에는 국내 산업에서 제외함
  
- WTO 반덤핑협정에서는 관계가 있다는 의미에 대해 3가지로 구분하여 언급하고 있지만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반덤핑 조사당국이 자의적으로 국내 산업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 수출자와 수입자 중 하나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하나를 통제하는 경우
  - 수출자와 수입자가 함께 제3자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당하는 경우
  - 수출자와 수입자가 함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3자를 통제하는 경우

### 나) 이해관계당사자 정보의 요청

- WTO 반덤핑협정 제6.8조에서는 이해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또는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긍정 또는 부정적인 예비 및 최종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
  -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사대상 업체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인지, 또는 제공할 수 없는 정보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모호한 경우가 있음

□ 이런 모호함으로 인해 정보제공이 비협조적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

○ 이용가능한 정보 원칙은 WTO 분쟁에서 주요 쟁점사항임

#### 다) 고려대상 물품

□ 고려대상 물품이란 덤핑조사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의미하며 이는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수입국의 국내 산업에 피해를 초래한 물품 의미

□ WTO 반덤핑협정에는 고려대상 물품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입국이 덤핑 조사를 할 때 자의적으로 고려대상 물품의 범위를 결정할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음

#### 라) 미소마진에 의한 조사 종결

□ WTO 반덤핑협정 제5.8조에서는 덤핑마진이 매우 작거나, 덤핑으로 수입된 물량이나 이로 인한 피해가 실제적이든 잠재적이든 무시할 만하다면 덤핑조사는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덤핑마진이 매우 작다는 것의 기준으로 수출가격 대비 덤핑마진이 2% 미만인 경우라고 명시함

○ 수입량이 작아 무시할 만한 수준이란 동일한 물품의 수입량에 대해 특정 국가의 덤핑수입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3% 미만인 경우로 적시함

### 3. 우회덤핑방지(Anti-circumvention)제도

#### 가. 개요

- 우회덤핑방지와 관련하여 우회(circumvention)란 수출자가 반덤핑관세명령의 적용대상인 물품에 있어 그 생산 및 선적방법 등의 변경을 통해 동 명령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의미
  - 주로 수출업체가 제3국이나 수입국 내에 공장을 설치하고 현지에서 부품을 조립, 생산하여 수입규제를 회피하려는 방식의 수출입
  - 반덤핑조치가 빈번하게 사용됨에 따라 반덤핑관세 적용대상물품의 생산 및 선적방법 등을 변경함으로써 반덤핑관세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가 우회덤핑(circumvention dumping)임<sup>10)</sup>
  
- 이러한 우회덤핑행위를 방지하면 기존의 반덤핑조치의 효과가 무력화되어 불공정무역 행위인 덤핑으로부터 국내산업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 일부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반덤핑관세명령을 우회덤핑에 확대·적용하는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우회덤핑방지규정상의 요건에 따라 수입국이 우회덤핑행위(Circumvention activities)로 인정하게 되면 일정한 조건에 따라 우회 수입된 제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기존의 반덤핑관세를 확정하여 소급적용하게 됨<sup>11)</sup>
  
- 현재 WTO 반덤핑 협정에서는 우회덤핑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하고 있지 않아 우회덤핑방지제도의 운영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
  - WTO 협정은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국 정부가 덤핑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sup>12)</sup>

10) 예를 들면, A국에서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은 B국 기업이 A국에 공장을 설립하고 B국에서 부품 및 구성요소를 수입하여 조립하는 경우 또는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은 기업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제3국으로 제조공장을 이동하는 경우

11) 김만길, 「FTA에 따른 우회덤핑과 원산지규정」, 『관세학회지』, 2014. 5, pp. 73~76

- 미국, EU 등 일부 국가가 반덤핑관련법에서 우회덤핑방지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음
- WTO의 우회덤핑에 관한 논의과정에서도 회원국의 우회덤핑관련 국내규정의 협정 위반 여부는 논의하지 않기로 함

### 나. 우회덤핑방지규정에 관한 국제 논의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WTO에서도 우회덤핑방지규정의 도입 문제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어 왔지만 현재까지 각국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우루과이라운드의 반덤핑협정의 교섭에 있어 우회문제가 주요한 쟁점의 하나로 부상하였으나 국가들 간의 견해 차이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문안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우회방지를 위한 통일된 규칙의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하는 데 머무름
    - 이는 그러한 우회방지규정의 입안 자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우회방지가 또 다른 무역장벽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 등에 기인한 것임<sup>13)</sup>
  - 따라서 반덤핑협정은 우회덤핑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반덤핑관세 부과가 동 협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원칙만을 천명하고 있음

#### 1) GATT 교섭<sup>14)</sup>

- 덤핑문제에 관한 GATT 우루과이라운드 교섭은 동경라운드 덤핑방지협정의 개정을 목적으로 개시되었음

12) 지난 GATT시기의 국제반덤핑규칙에서는 이러한 우회문제를 규율하지 않았음

13) 산업연구원, 「WTO체제하에서의 미국 및 EU 반덤핑법제의 분석」, 1998. 7, pp. 180~181

14) 이경화·조유미, 「우리나라에서의 우회적 덤핑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법학연구』 제19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pp. 422~425

### 가) 미국의 GATT 제안

- 미국은 1989년 수입국 우회, 제3국 우회, 미세변경상품과 후개발상품 수출의 세 종류의 우회덤핑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미국법을 근간으로 하여 개정 덤핑방지협정 내 우회덤핑방지 규정을 도입할 것을 발안함
  - 미국의 제안서에 따르면 수입국 당국은 우회덤핑행위에 대해 덤핑에 따른 손해 조사 없이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됨
- 수입국 우회의 경우 수입부품과 기존의 과세대상물품은 동종상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입부품에 대해 기존의 반덤핑 관세가 확대 적용됨
  - 따라서 수입국 당국은 문제의 조립용 부품의 수입이 완성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후 증가하였는지 여부, 가장 중요한 부품이 조립을 위해 수입국에 수입되었는지 여부, 부품의 수출자와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생산자 및 수입국에서의 조립 자간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함
- 제3국 우회, 미세변경상품과 후개발상품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논리가 적용됨

### 나) 던켈 초안(Dunkel Draft)

- GATT 사무국은 덤핑방지협정의 개정을 둘러싼 교섭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1년 12월 20일 던켈 초안을 회원국들에게 배포하였음
  - 동 초안은 수입국 우회에 대한 우회방지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3국 우회 및 국가 선택(country hopping)우회<sup>15)</sup> 등 3가지의 경우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동시에 신속한 절차도 인정함
- 던켈 초안에서는 수입국 우회의 요건<sup>16)</sup>으로 일곱 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들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수입국 우회에 대한 조치가 과세대상국으로부터 수입된 부품에 적용됨
  - 동종상품 테스트: 수입국에서 문제의 수입부품으로 제조된 조립상품이 기존의 과세 대상상품과 동종인지 여부

15) 수입국 우회와 유사한 상황이나 수출자가 반덤핑관세부과에 직면했을 때 제3국에 공장을 설립하고 제품을 생산하여 수입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임(한국무역위원회, 「각국 무역구제제도의 현재와 미래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2007. 7)

16) 던켈초안 제12조

- 조립자 테스트: 수입국에서 동종상품의 조립 또는 완성이 확정세가 부과된 수출자 또는 생산자와 관련 있는 당사자에 의하거나 또는 이들을 대리하여 행동하는 자에 의해 실시되었는지 여부
  - 부품공급 테스트: 부품이 과세대상국의 관련업자로부터 공급되었는지 여부
  - 조립개시 확대 테스트: 수입국에서의 조립작업이 기존의 확정세에 대한 조사개시 후 실질적으로 개시되거나 확대되어 부품수입이 증가하였는지 여부
  - 부품가액 70% 테스트와 부가가치 25% 테스트: 과세대상국으로부터 수입부품의 경비가 동종의 조립에 사용되는 전 부품의 경비 총액의 70% 이하가 아니며 조립에 따른 부가가치가 조립상품의 공정경비의 25%를 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요건
  - 덤핑테스트: 덤핑의 증거가 있었는지 여부
  - 손해방지 테스트: 수입부품의 과세가 기존의 과세대상 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제조하는 국내 산업에 손해를 재발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인지 여부
- 제3국 우회는 제3국에서의 부품조립에 관하여 수입국 우회조건 중 네 가지 조건<sup>17)</sup>을 충족할 경우 인정됨
- 국가선택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됨
- 기존의 확정세와 동종 상품이 제3국에서 생산되어 수출될 것
  - 기존 확정세를 부과받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3국 수출자에 대해 지배적 이익을 가질 것
  - 기존의 확정세 조사 개시 후 제3국으로부터의 수출이 현저히 증가하고 이에 과세대상국으로부터의 수출이 감소할 것
  - 제3국에서의 생산이 해당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기존의 공장에서 수행될 것
  - 상기 조건을 기반으로 행하여진 상품의 수입이 기존의 확정세로 인한 산업구제효과를 현저하게 손상할 것
- 제3국 우회 또는 국가선택에 대해서는 수입국이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하여 정식 덤핑손해조사를 개시하여야 함

17) 조립자 테스트, 부품공급 테스트, 부품가액 70% 테스트와 부가가치 25% 테스트

- 조사 후 덤프와 손해가 인정된다면 수입국은 확정세를 잠정세의 적용에 앞서 150일 까지 추급하여 적용할 수 있게 됨
- 그러나 덤켈 초안은 미국의 지지를 얻지 못함
  - 미국이 덤켈 초안에 반대한 이유
    - 우회방지조치를 3가지만을 규정한 것은 명시된 경우에만 우회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우회방지조치의 대상을 기존의 과세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부품에 한정하고 제 3국의 부품은 제외한 점
    - 제3국 우회와 국가전도의 경우 수입국 당국이 정식의 덤프손해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 점
- EU는 덤켈 초안의 70% 테스트는 EU 국내 규정의 60% 테스트보다 높은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음을 지적함
  - 또한, 25% 테스트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장도가격에 관해 덤켈초안은 재료, 노동, 공장에서의 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한 반면, EU 규정은 어떠한 공식적인 해석 없이 제조비용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음
  - EU의 규정은 EU 당국에게 우회덤핑규제 조치에 대한 재량을 부여한 반면, 덤켈초안은 당국이 재량을 가질 가능성을 대폭 낮춘 것<sup>18)</sup>
- 결국 1993년에 실제 채택된 WTO 반덤핑협정에서는 덤프이나 손해의 인정에 관한 규율 강화 규정만을 포함하고 우회방지조치나 국가 전도 등의 의제는 삭제되었음
  - 다만, 협상국들은 우회덤핑이 문제가 된다는 점에 동의하였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반덤핑위원회에서 논의를 계속할 것임을 당해 협정문에 성명서로 덧붙였음

18) 권희정, 「WTO 반덤핑협정의 우회덤핑규제 규정 도입 필요성」, 2009,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49

## 2) WTO 논의<sup>19)</sup>

- WTO 발족 후 우회방지규정 도입의 시비를 둘러싸고 교섭이 진행되어 왔지만 수년이 경과하여도 교섭이 타결되지 못하고 있음
  - 그 이유는 규정의 도입에 반대하는 일본, 한국 등 반대하는 세력과 찬성하는 서구세력 간에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
    - 각국은 우회의 개념, 조치의 필요성과 내용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음
  
- 우회방지에 관한 각료 결정에 따라 우회방지규정의 입안을 위임받은 WTO 반덤핑관행위원회(The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는 현재 비공식협의를 통해 우회방지규칙의 입안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임<sup>20)</sup>
  - 제3국 우회 등 제조공정이 여러 나라를 거치는 경우에 있어서도 원산지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
    - WTO의 원산지규정위원회(Committee on Rules of Origin)와 WCO(세계관세기구, World Customs Organization) 산하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에 의해 원산지 통일화 작업계획이 수립되고 추진 중임

### 가) WTO 규범의장 초안

- 2001년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협상이 결렬과 재개를 반복하여 규범협상 역시 결과가 불투명하였으나 2007년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개정안, 즉 규범의장 초안이 마련됨
  - 규범의장 초안에는 우회덤핑방지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어 있으며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이 절충됨
  
- 반덤핑관세의 적용범위를 고려중인 제품 이외의 제품의 수입과 고려중인 제품의 부품 및 미완성 형태의 제품의 수입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음

19) 이경화·조유미, 「우리나라에서의 우회적 덤핑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법학연구』 제19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pp. 425~428

20) 산업연구원, 「WTO체제하에서의 미국 및 EU 반덤핑법제의 분석」, 1998. 7, pp. 180~181

- 반덤핑 관세의 우회를 구성하는 상황으로 수입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재의 확정 반덤핑관세를 그 관세 대상국에서 고려중인 당해 제품 이외의 제품의 수입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음
  - 현재의 확정 반덤핑 관세의 적용범위를 제3국에서 조립 또는 완성되었다고 고려중인 제품의 부품이나 미완성 형태의 제품의 수입에까지 확대할 수 있는데 그러한 수입이 덤핑판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
- 조립 또는 완성 물품의 경우 다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우회덤핑으로 판단할 수 있음
- 확정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야기한 조사의 개시 후 관세대상국으로부터 고려중인 제품의 수입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대체되어 온 경우
    - 고려중인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의 조립 또는 완성을 위하여 제품의 일부나 미완성 형태의 제품을 반덤핑 관세대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 고려중인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수입 및 반덤핑관세대상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의 일부나 미완성 형태를 제3국에서 조립 또는 완성한 제품의 경우
    - 반덤핑 관세대상국에서 사소한 변경이 이루어진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 이러한 변화의 주요한 원인이 반덤핑관세와 관계없는 경제적 또는 상업적 요소라기 보다는 관세부과 대상국의 고려중인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의 존재인 경우
  - 반덤핑관세부과 대상국에서 고려중인 제품의 수입이 대체되어 온 수입이 당해 관세의 무역구제적 효과를 손상시키는 경우
- 우회덤핑이라고 판정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제품의 부품이나 미완성 형태의 수입과 제3국에서 조립되거나 완성된 제품의 수입에 관하여 권한있는 당국은 조립 또는 완성의 공정이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으며 부품이나 미완성 형태의 비용이 조립 또는 완성된 제품의 전체 비용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임
  - 부품이나 미완성 형태의 가치가 조립 또는 완성된 제품의 부품이나 미완성 형태의 전체 가치의 60% 미만, 조립 또는 완성의 공정과정 중 부품 및 미완성 형태의 부가가치가 전체 제조비용의 25%를 초과한 경우에는 우회덤핑이 있었다고 판정할 수 없음

- 우회덤핑을 결정하는 것은 정식 신청에 따라 개시된 공식적인 조사에 근거해야 함
  -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이러한 조사는 동종 상품의 국내 생산자에 의해 표명된 신청이 국내 산업에 의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이루어졌다고 결정하지 않으면 개시될 수 없음
  
- WTO 반덤핑협정에 우회덤핑규제에 대해 2008년 5월 의장초안에 대한 대표단의 의견을 조합한 제안서에서는 우회덤핑규제조항이 삭제됨
  -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의장초안에 포함된 우회덤핑규제규정의 정확성에 대한 서로 조화되기 어려운 반대 의견으로 인해

#### 다. 우리나라의 우회덤핑방지

- 그동안 우리나라는 반덤핑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나라 중 하나였기 때문에 반덤핑제재 조치에 대하여 국제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오히려 오·남용에 따른 제한적 규제를 주장해 왔음
  - 1999년 우리나라 정부대표부(the Permanent Mission of Korea)는 우회덤핑방지에 관한 비공식 그룹(Informal Group on Anti-Circumvention)에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음
  - 당해 보고서에서 우회(Circumvention)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우회덤핑을 다루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짐
    - 우회덤핑방지에 대한 사안도 본질적으로는 반덤핑 문제이기 때문에 다자적인 우회덤핑방지 협정은 불필요하며, 이러한 사안은 반덤핑 규정에 의해 보다 더 효율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고, 필요하다면 기존의 반덤핑협정을 개선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
  
- 특히, 우리나라는 제3국에서의 생산 재배치 및 조립이 우회덤핑을 구성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음
  - 반덤핑규제의 우회라고 파악되어야 하는 활동과 정당한 상업적 활동과는 구별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음

- 기업이 제3국에 생산설비를 새로이 설립하는 데에는 반덤핑 관세의 부과를 회피하려는 이유도 있겠지만, 비용의 증가, 소비자 기호의 변화, 환율 변동 등도 제3국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하는 원인일 수 있음
  - 또한, 수출 목적지에 근접한 제3국 또는 수입의도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특혜적 접근이 가능하므로 회사의 입장으로는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게 됨
- 이후 우리나라는 공동제안서의 형태로 반덤핑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지만 우회덤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한 경우는 거의 없었음<sup>21)</sup>

#### 1) 우리나라의 우회덤핑방지규정<sup>22)</sup>

- 현재 우리나라는 우회덤핑방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 단지, 「관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3항 및 4항에서 형식·모양·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의 판매 등의 방법으로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대외무역법에서도 원산지를 가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당해 규정만으로는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원산지를 위장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없음
    - 「대외무역법」 제38조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당해 물품들을 수입하는 국내 수입자에 대한 제재는 가능하더라도 국외에서 벌어진 원산지 위장 사안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은 곤란함

21) 이경화·조유미, 「우리나라에서의 우회적 덤핑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법학연구』 제19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pp. 431~433

22) 이경화·조유미, 「우리나라에서의 우회적 덤핑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법학연구』 제19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pp. 436~437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도 원산지 가장행위 및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등을 규제하는 규정<sup>23)</sup>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회덤핑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한 것은 아님
- 반덤핑조치를 많이 받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반덤핑제도의 제한적인 운용을 주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우회덤핑에 대한 논의는 조심스러운 상황임
- WTO 논의에서 우회덤핑규제를 반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EU와 같이 우회덤핑방지규정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임

## 2) 우리나라의 우회덤핑 사례

### 가) 중국산 일회용라이터 사례

- 1990년대 중국산 및 인도네시아산 일회용 라이터가 국내시장의 90%를 독식하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고, 이후 말레이시아, 베트남, 라오스산 일회용 라이터들이 국내시장을 잠식하여 조사가 개시됨
- 수입자와 중국 제조업체들은 서류상만의 회사를 설립하거나 중국에서 말레이시아산으로 원산지를 조작하여 홍콩이나 말레이시아를 단순 경유하였음<sup>24)</sup>
- 중국산 일회용라이터를 대만산으로 원산지를 조작하거나 HS 코드를 허위 신고<sup>25)</sup>하는 방법으로 반덤핑조치를 우회함
- 중국산 라이터를 북한산으로 원산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우회한 사례도 있음

23)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24) 이경화·조유미, 「우리나라에서의 우회적 덤핑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법학연구』 제19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pp. 434-435

25) 9613.10(1회용 포켓형 라이터) → 9613.90(기타의 라이터)

나) 대만산 CD-R 사례<sup>26)</sup>

- 대만산 CD-R은 2002년 1월부터 5년간 51.7%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었는데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원산지를 홍콩, 중국산 제품으로 속여 수입한 사례임
  - 무역위원회 조사결과, 대만산 CD-R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이후 수입실적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인근 홍콩 및 중국산의 경우 수입실적이 급증하여 조사한 결과 우회 수입이 밝혀진 것
  
- 당해 우회수입의 수법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방법이었음
  - 선하증권(B/L)상에 송하인이 대만 업체임에도 중국 등 제3국 소재 업체명으로, 선적지를 제3국 항구로 표시함
  - 대만의 수출자에게 대만이 아닌 중국 등 제3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송부 받음
  - 대만에서 CD-R을 선적하여 중국, 홍콩 등 제3국을 경유하는 방법으로 수입하면서 경유지에서 재포장 및 원산지 표시를 변경함

## 다) 대만산 에틸렌 초산비닐 공중합체 에멀전타입(EVA) 사례

- 1997년 대만산 EVA에 대한 반덤핑조치에 따라 대만으로부터의 수입량은 감소하였으나 대만의 EVA 수출자가 말레이시아에 EVA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말레이시아를 통하여 한국에 우회 수출한 사례임
  - EVA 제품의 주된 원재료는 모두 대만에 의해서 공급되며 말레이시아 공장은 주된 재료를 추가 가공하여 EVA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함

26) 관세청 보도자료, 「덤핑방지관세 회피사범 대기적발 - 대만산 CD-R 우회수입 원산지조작 수법 사용」, 2003. 3. 25

### Ⅲ. 주요국의 우회덤핑방지 규정 및 운영현황

#### 1. 미국

- 미국은 WTO협정의 수락과 더불어 우회덤핑방지 규정의 결함을 시정한 신규정을 도입하여 현재 우회덤핑방지규정은 19 U.S.C. §1677j에 규정되어 있음
  - 미국 반덤핑법상 우회방지규정은 1988년 종합통상경쟁력법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으나 여러 약점이 지적되면서 이를 개정 및 강화하여 왔음
    - － 우회덤핑규제 규정을 제정하기 이전에는 법적인 근거 없이 반덤핑조치 범위를 확장적용하여 우회덤핑행위에 대응
  - 상무부는 반덤핑조치를 위하기 위한 상무부 규칙 19 C.F.C. Part 351.225에서 우회덤핑을 규율하고 있음

#### 가. 우회덤핑규제 대상 유형 및 요건<sup>27)</sup>

- 미국의 우회덤핑방지규정을 근거로 하는 우회덤핑의 세 가지 유형에는 수입국 우회(importing country circumvention), 제3국 우회(third country circumvention), 미세변경 물품이나 후개발물품이 있음

##### 1) 수입국 우회(미국 내에서 조립 또는 완성된 물품)

- 수입국 우회는 한 물품이 반덤핑관세명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수출국이 과세대상 물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신 부품이나 원료를 수출하여 미국 내에서 이를 조립하거나 완성하여 동 명령을 회피하는 것

27) 김만길, 「FTA에 따른 우회덤핑과 원산지규정」, 『관세학회지』, 2014. 5, pp. 77~79

- 반덤핑관세는 과세대상물품에만 부과되고 그 부품에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수입국에 부품 수입과 동종물품의 조립은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음
- 수입국 우회는 물품에 적용되는 반덤핑관세명령을 그 구성부품 또는 원료에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
  - 따라서 수입부품이나 원료에 대하여 우회덤핑을 인정하려면 부품이나 원료의 수입이 반덤핑관세 적용대상물품의 수입을 대체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함
- 수입대체를 인정하여 수입부품이나 원료를 기존 반덤핑조치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면 먼저 미국 내에서 조립 또는 완성된 물품이 다음의 4가지 요건에 해당하여야 함
  - 미국에서 판매되는 물품이 반덤핑관세명령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동일 부류 또는 동일 종류의 물품이어야 함
  - 미국에서 판매되는 물품이 반덤핑관세명령의 적용을 받는 국가로부터 수입된 부품이나 원료로 조립 또는 완성되어야 함
  - 미국에서의 조립 또는 완성공정이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않아야(minor or insignificant) 함
    -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미국 내에서의 투자 수준, 미국 내 연구 및 개발 수준, 미국내 생산공정의 성질, 미국내 생산설비의 정도,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 공정의 가치가 물품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이 있음
    - 각 기준의 중요도는 우회덤핑에 관한 각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짐
  - 반덤핑관세 대상국으로부터 수입된 부품이나 원료의 가치가 물품 전체 가치에서 중요한 비율(significant portion of the total value of the merchandise)을 차지하여야 함
    - 생산비용에 기초하여 수입부품이나 원료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음
- 수입부품이나 원료가 반덤핑조치 적용대상 물품의 조립 또는 완성에 사용되었는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항들이 있음
  - 원료구매 등의 교역형태

- 부품·원료의 제조자나 수출자와 물품의 조립자나 완성자 사이의 특수 관계
- 반덤핑관세명령을 내리게 된 조사절차의 개시 이후 부품이나 원료의 미국으로의 수입 증가

## 2) 제3국 우회(제3국에서 조립 또는 완성된 물품)

- 제3국 우회는 반덤핑관세명령 대상국이 과세대상물품을 수출하는 대신 제3국으로 부품이나 원료를 수출하여 그곳에서 조립 또는 완성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기존의 반덤핑관세명령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sup>28)</sup>
  - 반덤핑관세는 원칙적으로 제3국에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제3국에서의 부품수입과 동종물품의 조립 및 수출은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음
  - 부품이나 원료가 반덤핑관세명령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3국으로 수출하고 그곳에서 조립 또는 완성하여 완제품으로 만든 후 미국으로 수출하여 동 명령을 회피하는 것을 규제함
  - 특히 부품이나 원료에 대한 반덤핑관세명령을 완제품에 대하여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음
    - 제3국에서 조립 또는 완성된 물품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여 기존의 반덤핑관세명령의 적용대상인 부품이나 원료의 우회덤핑을 간접적으로 규제
- 제3국에서 조립 또는 완성된 물품에 대하여 우회덤핑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동 물품의 수입이 반덤핑관세 적용대상물품의 수입을 대체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함
  -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이 반덤핑관세명령의 대상국에서 생산하는 물품과 동일부류 또는 동일 종류의 물품이어야 함
  - 미국으로 수입되기 전에 반덤핑관세명령의 적용대상물품(부품이나 원료) 또는 반덤핑관세명령 적용대상국의 물품(완제품)을 사용하여 제3국에서 조립 또는 완성된 물품이어야 함
  - 제3국에서의 조립 또는 완성 공정이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않아야 함<sup>29)</sup>

28) 반덤핑관세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이를 수출하는 수출업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발동하는 것임

- 반덤핑관세명령의 대상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가치가 미국으로 수출된 물품의 전체 가치에서 중요 부분을 차지하여야 함
  - 반덤핑관세명령의 회피 방지를 위하여 동 물품을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상무부가 결정하여야 함
- 제3국에서 조립 또는 완성된 물품을 기존의 반덤핑조치 적용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상무부는 원료구매 등의 교역형태, 부품이나 원료의 제조자 및 수출자와 이를 사용하여 제3국에서 조립 또는 완성한 자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 반덤핑관세명령을 내리게 된 조사절차를 개시한 이후 부품 또는 원료의 제3국에 대한 수출증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함

### 3) 미세변경물품(사소한 변경을 가한 물품)이나 후개발물품(반덤핑조치 이후 개발된 물품)

- 미세변경물품이나 후개발물품은 과세대상물품과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음
- 미세변경상품은 반덤핑조사 중인 물품이나 반덤핑관세명령이 발동된 물품과 동일 부류 또는 동일 종류의 물품에 사소한 변경을 가한 물품으로 반덤핑관세명령 적용대상물품의 외관 또는 형태에 경미한 변경을 가하여 동 명령을 회피하는 것을 의미함
    - 다만, 상무부가 이를 조사대상으로 하거나 반덤핑관세명령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임
  - 후개발상품은 반덤핑조사가 개시된 이후 개발된 물품을 수출하는 것
    - 이를 반덤핑관세명령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상무부는 신개발품과 반덤핑명령 적용대상물품 간의 물리적 성질의 동일성 여부, 최종 구매자의 기대의 동일성 여부, 최종 용도의 동일성 여부, 유통경로의 동일성 여부, 광고 및 진열방식의 유사성 여부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29)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않은지의 판단은 수입국 우회에서의 미국 내에서 조립 또는 완성공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같음

- 상무부는 신개발품이 반덤핑조사 청원서 또는 반덤핑조사 절차 진행과정 중 행정 당국의 사전통보에 명시된 물품과 관세분류가 다르다는 이유와 구매자로 하여금 추가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반덤핑관세명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됨
- 상무부 장관은 ITC의 권고를 고려하여 반덤핑조치 이후 개발된 물품을 현재 효력을 가지는 기존의 반덤핑관세명령 적용대상에 언제든지 포함시킬 수 있음

## 나. 우회덤핑판정 절차<sup>30)</sup>

### 1) 조사신청 및 개시결정

- 일반적으로 국내 산업이 우회덤핑의 발생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용가능한 자료를 첨부하여 상무부에 조사신청을 함으로써 우회덤핑절차가 시작됨
  - 조사신청자는 신청서 사본을 기존의 반덤핑조사에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함
- 상무부는 조사신청 접수 후 45일 이내에 조사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다른 이해당사자에게 확인한 후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
  - 조사개시를 결정하면 연방관보에 조사개시 결정의 법률적, 사실적 이유 및 이해당사자가 제기한 논점을 공지
  - 드물기는 하지만 상무부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음

### 2) 질문지

- 조사개시가 결정되면 상무부는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하여 질문지를 송부할 수 있으며 제출 자료에 대해 심사할 수 있음

30) 이재형, 「우회덤핑방지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2003년 춘계 학술발표대회, 2003. 5, pp. 126~128

- 미국 또는 제3국에서의 조립이나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 질문지는 기존의 반덤핑관세명령 대상국의 당해 물품 생산자 및 미국 또는 제3국에서 조립이나 생산하는 기업에 송부됨
- 외관 또는 형태의 사소한 변경이나 신개발품에 의한 우회덤핑을 주장하는 경우 통상 반덤핑관세명령 적용 대상국의 생산자에게만 질문지를 송부
-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상무부는 추가질문을 함

### 3) 질문 내용

- 미국 또는 제3국에서의 조립이나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 상무부는 자료를 요청함
  - 관련국에서의 공정비용을 포함한 생산공정의 성질, 반덤핑관세명령 적용 대상국에서 수출한 부품 또는 요소의 가치, 미국 또는 제3국에서의 공정으로 발생한 부가가치 및 완제품의 가치 등에 관한 자료임
  - 그 외에 미국 또는 제3국에 대한 투자수준, 연구 및 개발수준, 생산설비의 정도와 관련된 자료도 요청함
  - 한편, 적절한 출처를 통하여 당해 물품의 교역형태, 부품 또는 원료의 생산자나 수출자와 미국 또는 제3국에서 조립이나 완성공정을 수행하는 자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 기존의 반덤핑관세명령을 발동하게 된 조사의 개시 이후 부품이나 원료의 미국 또는 제3국에 대한 수출증가 여부에 관한 자료를 요청함
- 외관의 사소한 변경을 주장하는 경우 상무부는 변경비용을 포함한 변경의 성질과 변경이 물품의 용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함
- 신개발품의 경우 상무부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 최종사용자의 기대, 최종용도, 유통경로의 동일성, 기존 물품과 유사한 방법의 광고 또는 전시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함

#### 4) 상무부 판정

##### 가) 예비판정

- 상무부는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하면 예비판정을 내리고 연방관보에 공지
  - 공지는 예비판정에 대한 설명과 논점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포함함
  
- 상무부는 이해당사자로부터 사건개요서(briefs)와 반박개요서(rebuttal briefs)를 접수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청문회를 개최하며 해당 물품을 기존의 반덤핑관세명령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뜻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ITC에 통보함
  
- ITC는 필요한 경우 상무부와 협의한 후 기존 반덤핑관세명령을 우회조사 대상물품에 적용하는 것이 기존의 긍정적 피해판정에 합치하는지를 서면으로 60일 이내에 상무부에 통보함
  - 반덤핑관세명령 적용대상이 확대되면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국내산업의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동 명령의 기초가 된 심각한 피해(significant injury) 요건에 대한 합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 나) 최종판정

- 상무부는 이해당사자가 제기한 논점과 ITC의 권고를 고려하여 최종판정을 하고 이를 연방관보에 공지
  - 통상의 경우 상무부는 조사신청 접수 후 300일 이내에 우회덤핑에 관한 최종판정을 하여야 함
  
- 조사 전 과정에 걸쳐 이해당사자는 상무부에 제출하는 문서의 사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비공개자료의 경우 평문요약문을 제공하여야 함
  - 비공개자료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공개되지 않음

- 우회덤핑조사와 관련된 상무부의 결정에 대해서 워싱턴에 소재하는 국제통상법원 (CIT)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다. 우회덤핑 사례

### 1) 한국산 컬러TV 사례<sup>31)</sup>

- 1984년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컬러TV에 대해 반덤핑관세명령을 발동함
  - 1991년 후반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은 컬러TV의 대미 직수출을 중지하고 멕시코 및 태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여 현지에서 미국으로 수출하였음
- 1995년 미국의 전자노조 등은 반덤핑관세명령 적용 대상인 한국기업이 컬러TV 부품을 멕시코로 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 후 미국으로 수출함으로써 동 명령을 회피하고 있다고 상무부에 우회덤핑 조사개시를 요청함
  - 1996년 우회덤핑 조사가 개시되었으나 1997년 신청자의 전자노조의 조사중지요청에 따라 우회덤핑의 결정 없이 조사가 종결함
- 상무부는 멕시코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우회조사 대상물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사개시를 결정함
  - 반덤핑관세명령의 적용대상과 같은 TV임
  - 반덤핑관세명령 대상국인 한국을 원산지로 인정할 정도의 생산이 멕시코 등으로 경유되기 이전에 이루어졌음
  - 멕시코 등에서의 조립 또는 완성이 사소한 정도에 그침
  - 완제품의 전체 가치 중 한국산 부품의 가치가 상당한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기에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었음

31) 이재형, 「우회덤핑방지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2003년 춘계 학술발표대회, 2003. 5, pp. 129~130

- 조립 또는 완성공정의 정도가 사소하다는 근거로 지적을 함
  - 주요 공정인 개발·설계 및 디자인, 부품 생산, 완제품의 조립과 성능시험의 3단계 중 세 번째 단계만 멕시코 등에서 수행되고 처음 두 단계는 한국에서 수행된 점을 문제삼음
  - 그 밖에 무역형태의 변화, 부품 수출자와 부품 수입자 및 조립자의 관련성, 조사개시 후 수입증가에 대해서도 반덤핑관세명령의 발동 이후 멕시코 등으로 부품 수출이 이루어지고 현지기업은 모두 한국기업이 투자한 회사이며 반덤핑관세 부과 이후 수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상무부는 인정함

## 2) 이탈리아산 파스타 사례<sup>32)</sup>

- 미 상무부는 1996년 5파운드 또는 그 이하로 포장되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이탈리아산 파스타에 대하여 반덤핑관세 부과명령을 발동하였음
  - 동 반덤핑조사를 신청하였던 국내 산업은 이탈리아 기업이 5파운드를 초과하는 대형포장으로 파스타를 미국에 수입한 후 5파운드 또는 그 이하로 재포장하여 판매함으로써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혐의로 1997년 우회덤핑조사 신청
- 상무부는 조사신청이 우회덤핑조사 신청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함
  - 우회조사개시를 결정하고 조사대상 파스타를 반덤핑관세명령의 적용대상으로 할 것을 ITC에 제안, ITC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협의의 필요가 없을 상무부에 통보함
  - 그 결과 상무부는 긍정적인 최종판정을 하였음
- 대형포장으로 수입된 파스타를 미국에서 재포장하는 것은 사소한 것으로 우회덤핑이 확인되면 반덤핑조치 대상물품의 수입으로 간주됨
  - 미국의 우회덤핑방지규정은 미국에서 조립하기 위하여 조립되지 않거나 완성되지 않은 제품을 수입하여 반덤핑관세명령을 우회하려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새로운 피해 확인은 요구되지 않음

32) 이재형, 「우회덤핑방지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2003년 춘계 학술발표대회, 2003. 5, pp. 131~132

- 우회덤핑조사에 대형포장 파스타를 포함하는 것은 기존 반덤핑조치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상무부는 동일한 생산자로부터 동일한 소비자에게 최종적인 소매판매를 위하여 선적된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품이나 우회선적하는 경우만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함
  - 5파운드를 초과하는 포장의 다른 파스타는 반덤핑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음
  
- 대형포장의 파스타가 완제품으로서 부품이나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상무부는 대형포장 파스타의 부품 또는 원재료로서 적용대상이 되는 물품을 파스타와 포장으로 보았음
  - 대형포장 파스타의 우회수입과 반덤핑조치대상물품의 차이는 포장뿐
  - 포장은 수입파스타 중 소매판매용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입 후 5파운드 이하로 재포장되는 대형포장 파스타는 부품 또는 원료에 해당된다고 보았음

## 2. EU

- EU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진행중이던 1987년 6월 기존 반덤핑규칙을 수정하여 EC 역내에서 설립된 공장에서 단순 조립공정을 통한 반덤핑조치의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 No. 1761/87<sup>33)</sup>을 도입함
  - GATT협정과의 충돌문제 등으로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현재 반덤핑 규칙 No. 384/96을 채택하여 우회덤핑을 규제하고 있음<sup>34)</sup>
  - 현 반덤핑규칙 No. 384/96<sup>35)</sup>에서는 EU 혹은 제3국 영역내 조립공정의 경우뿐만 아니라 발효중인 반덤핑조치를 우회하려는 행위가 발생하면 동 규칙에 의하여 부과

33) 스크루드라이버(screwdriver)만 가지고 수행될 수 있는 작업과 같이 단순 조립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역내에 설립된 조립공장을 이용한 반덤핑관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입안되었다는 점에서 '스크루드라이버 규정(screwdriver regulation)'으로 불림

34) EU의 우회덤핑규정의 발전과정은 원산지규정 적용의 발전과정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음

35) EU 반덤핑규칙 384/96 제13조

된 반덤핑 관세가 제3국에서 수입되는 유사상품(like or similar products) 또는 유사상품의 부품에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의 개념으로도 규제할 수 없는 우회덤핑행위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도입하여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우회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음

- 또한 절차면에서는 수입의 등록의무 및 반우회증명서의 제시의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기존 규정에 비하여 불명확한 제 요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심사체계를 한층 강화하였음<sup>36)</sup>

□ 그밖에 반덤핑규칙 규정 이외 관세와 관련된 다른 규정의 적용을 허용하고 있음

- EU에서의 조립공정과 관련해서는 HS 해석에 관한 일반규칙을, 제3국에서의 조립공정과 관련해서는 비특혜원산지규정을 적용함

#### 가. 우회덤핑의 정의<sup>37)</sup>

□ 반덤핑규칙 제13조에서는 우회덤핑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음

- 우회덤핑행위를 조립된 동종 상품의 가격 및 수량의 측면에서 반덤핑 관세의 산업구제효과가 훼손되고 있는 경우와 동종 상품에 대하여 이미 확립된 정상가격과 관련하여 덤핑이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 반덤핑 관세의 부과 외에 정당성이 부족한 관행 또는 작업방식으로 발생하는 제3국과 유럽공동체 사이의 무역형태의 변화라고 정의하고 있음

- 즉, 제3국 또는 EU 역내에서의 조립이 교역형태의 변화, 반덤핑관세의 구제효과 훼손 등 일정 내용에 해당하면 우회덤핑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우회덤핑으로 판정되면 제3국으로부터 수입된 동종물품 또는 그 부품에 대하여 현재 효력을 가지는 반덤핑조치를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음<sup>38)</sup>

36) 채형복, 「유럽연합(EU)의 원산지제도」, 『계간 무역구제』, 2001. 10, pp. 172~173

37) 이재형, 「우회덤핑방지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2003년 춘계 학술발표대회, 2003. 5, pp. 135~137

38) 이재형, 「우회덤핑방지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2003년 춘계 학술발표대회, 2003. 5, p. 135(EC Regulation No 384/96, Article 13)

### 1) 교역형태의 변화

- 교역형태의 변화는 반덤핑조치 대상국으로부터의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물품의 수입 감소와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물품 수입의 대체로 구성됨
  - 교역형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반덤핑조치 대상국이나 제3국으로부터 물품 또는 반덤핑조치 대상물품을 약간 변형한 물품의 수입 증가가 있을 수 있음
  - 또한, 반덤핑조치대상물품이 제3국을 통하여 허위원산지 신고를 하여 역내로 들어올 수 있음
- 교역형태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반덤핑조사 절차의 개시 이후 두드러지게 되며 반덤핑조치 채택 후 심해짐

### 2) 관행, 공정 또는 작업

- 반덤핑조치를 우회하는 관행, 공정 또는 작업에 해당하는 행위의 잠재적 범위는 매우 넓어 단순한 환적, 재포장, 허위 원산지표시 또는 외관의 사소한 변경과 같은 단순한 행위부터 매우 복잡한 행위를 포함
  - 이러한 관행, 공정 또는 작업이 무역형태의 변화를 초래하여야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즉, 관행, 공정 또는 작업과 무역형태의 변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3) 관세부과 외의 적절한 사유 또는 경제적 타당성의 불충분

- 관세부과 외의 적절한 사유 또는 경제적 타당성의 불충분 여부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히고 있지 않으나 수출자가 반덤핑관세 외에 관행, 공정 또는 작업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를 입증하여야 할 것
  - 만일, 우회개시와 반덤핑절차의 개시 또는 반덤핑관세부과의 개시 사이에 시간적 동일성이 있다면 다른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음

#### 4) 반덤핑관세의 구제효과 훼손

-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반덤핑조사가 진행중인 덤핑수입이 가격이나 수량에 미치는 효과와 우회협의를 받는 덤핑이 미치는 효과가 유사한 것이 입증되어야 함
  - 물품의 염가판매 또는 물품수입의 현저한 증가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음
    - － 원 조사절차의 피해판정과 유사하나 원 조사절차의 전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것은 아님
  - 반덤핑관세의 구제효과 훼손은 관행, 공정, 작업을 통한 수입이 덤핑과 동일한 기능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 5) 덤핑의 존재

- 원 조사절차에서 확인된 동종 또는 유사물품의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덤핑이 존재하여야 함
  - 우회덤핑조사 대상물품의 가격이 원 조사절차에서 확인된 정상가격 이하이면 덤핑이 존재하는 것
  - 그러나 원 조사절차에서 확인된 덤핑마진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나. 우회덤핑규제 대상 유형<sup>39)</sup>

- EU의 우회덤핑방지조치는 EU공동체 또는 제3국 영역내 조립공정의 경우<sup>40)</sup>뿐만 아니라 발효중인 조치가 우회되었을 때 제3국을 발송지로 하는 동종물품의 수입에도 적용될 수 있음
  - 이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우회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음
  - 우회덤핑으로 판정되면 제3국으로부터 수입된 동종물품 또는 그 부품에 대하여 현재 효력을 가지는 반덤핑조치를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음<sup>41)</sup>

39) 김만길, 「FTA에 따른 우회덤핑과 원산지규정」, 『관세학회지』, 2014. 5, pp. 80~81

40) 부품형태로 EU 역내로 수입된 이후 조립되어 판매되거나 부품형태로 제3국에 수출된 이후 완성된 물품으로 EU 역내로 다시 수입되는 경우(김만길, 「FTA에 따른 우회덤핑과 원산지규정」, 『관세학회지』, 2014. 5, p. 80)

### 1) 사소한 변경

- 반덤핑조치 대상국가에서 수입된 물품에 사소한 변경이 있는 경우 우회행위가 있다고 판정하여 기존 반덤핑 관세를 변경된 물품에도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우회덤핑을 위한 관행, 공정 또는 작업은 반덤핑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른 HS 코드에 해당되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사소한 변경을 포함
  - 사소한 변경은 물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

### 2) 제3국을 통한 환적

- 반덤핑조치 대상물품을 제3국을 경유해 수입국으로 선적하는 행위임

### 3)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판매경로와 형태의 재편성

- 반덤핑조치 대상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반덤핑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당해 물품의 판매경로와 형태를 재편성하는 것
  -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것 이외에는 달리 충분한 원인이나 경제적 정당성을 찾을 수 없는 관행, 공정 또는 가공에서 비롯된 EU와 제3국간 거래형태의 변경

### 4) EU 또는 제3국에서의 부품조립 공정

- EU 내 또는 제3국에서의 부품 조립이 발효 중인 조치의 우회에 기여했다고 간주되는 경우 우회덤핑의 한 유형으로 규정함
  - 조립공정과 관련하여 EU 내 기업뿐만 아니라 제3국에 설립된 기업도 대상이 됨
  - EU내 조립 공정만을 조사대상으로 할 경우 수출국에 제3국에 공장을 설립하여 EU

---

41) 이재형, 「우회덤핑방지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2003년 춘계 학술발표대회, 2003. 5, p. 135(EC Regulation No 384/96, Article 13)

내 고용과 투자가 줄어든다는 염려와 우회덤핑 관련 규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동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우회덤핑규정에 포함

〈표 Ⅲ-1〉 EU의 우회덤핑 유형(1995~2012)

(단위: 건)

유형	환적	사소한 변경	제3국에서 조립	EU에서 조립	판매경로 변경
조사 건수	28	9	5	2	1

자료: Edwin Vermulst, "EU Anti-Circumvention Rules & Practice", Seminar on trade defense measures, 2012. 4, p. 42

#### 다. 우회덤핑방지조치 부과 요건<sup>42)</sup>

- 동종물품의 가격이나 수량에 미치는 반덤핑관세의 구제효과가 조립물품에 의하여 훼손된다는 증거가 있어야 함
  - 동종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해 설정된 기존의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덤핑이라는 증거가 필요함

##### 1) 조사개시 이후 또는 직전에 조립행위 개시 또는 상당한 수입의 증가

- 반덤핑조사가 개시된 후 또는 직전에 조립공정이 시작되었거나 반덤핑 관세조치의 대상이 되는 국가로부터의 관련 부품의 수입이 현저히 증가하여야 함
  - 역내의 부품조립뿐 아니라 제3국에서의 부품조립을 통한 수출도 우회로 봄
    - 역내의 부품조립에 대해서만 우회를 인정하는 경우 제3국을 통한 수출이 이루어져 역내 고용기회의 상실을 우려한 규정
  - 조립행위의 시작 또는 상당한 수입 증가 시점은 반덤핑조사의 개시 이전뿐 아니라 직전도 포함하고 있음

42) 이재형, 「우회덤핑방지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2003년 춘계 학술발표대회, 2003. 5, pp. 137~138

- 상당한 수입 증가를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아 자의적인 판단의 우려가 있음
  - 조사개시 직전 및 현저한 증가의 개념에 대한 해석기준에 대하여 EU 당국은 개개의 사안별 심사를 통하여 명백한 해석기준을 제시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

## 2) 부품가치의 60% 이상 구성

- 완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총가치 중 반덤핑조치 대상국으로부터 유입된 부품의 가치가 60% 이상인 경우 우회에 해당됨
  - 최종 완제품의 가치는 60%의 적용과 관련 없음
  - 우회덤핑이 아니라면 40% 이상의 부품이 EU산 또는 제3국산이어야 함
    - 다만, 제3국도 반덤핑조치 대상국이어서는 안됨
  - 60% 적용에 있어 반덤핑조치 대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것으로 족하며 반덤핑조치 대상국이 원산지일 것을 요구하지 않음
  - 다만, 조립 또는 생산 중에 반입된 부품에 부가된 가치가 제조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는 우회덤핑이 없는 것으로 간주
    - 25% 기준은 조립공정 또는 완성공정중에 부가된 가치만을 평가하는 것이며, 부가된 가치가 총 생산비용의 25% 미만이라면 우회덤핑방지조치는 부과될 수 없음
  - 이 조건은 단지 부품의 가격만을 언급할 뿐 재료의 가격을 제외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EU 공동체당국은 광범위한 자유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

## 3) 반덤핑관세의 구제효과 훼손 및 덤핑의 증거

- 동종물품의 가격이나 수량에 미치는 반덤핑관세의 구제효과가 조립물품에 의하여 훼손되고 있으며 동종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해 이미 확립된 기존의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덤핑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우회행위로 볼 수 있음
  - 우회한 공장에서 조립된 동종물품의 가격 및 수량이 이미 부과된 반덤핑조치의 구제효과를 약화시키지 않는다면 새로운 우회덤핑방지조치를 채택할 필요없음

- 피해의 요건과 관련하여 WTO 반덤핑협정에서 피해는 반드시 조사해야 할 요건인데 반해, EU의 우회덤핑규제 규정에는 피해판정에 대한 요건이 없음

#### 라. 우회덤핑판정의 절차<sup>43)</sup>

- 우회덤핑조사는 이해관계 당사자인 역내 산업에 의한 우회덤핑 조사신청이 있고, 조사신청이 우회덤핑요건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EU위원회가 자문위원회와 협의한 후 조사를 개시함
  -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개시를 할 수 없음
- 위원회는 관세당국에 우회덤핑 혐의가 있는 수입물품의 등록하게 하거나 보증금을 요구하도록 지시하여야 함
- 우회덤핑조사는 EU위원회가 수행하며, 회원국 관세당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동 조사는 9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
-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기존 반덤핑조치의 확대적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EU이사회가 결정함
  - EU위원회의 반덤핑조치 확대 제안은 EU이사회가 제안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단순다수결로 제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채택되어 동 조치를 확대 적용
  - 이사회에 의한 반덤핑조치의 확대는 등록일로부터 소급되어 적용함
- 수입자는 물품수입이 우회덤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명서의 교부를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증명서의 교부 여부는 자문위원회 또는 이사회와 협의 후 위원회가 결정함
  - 증명서는 기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유효
  - 증명서가 첨부된 물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의무적 등록이 적용되지 않음

43) 이재형, 「우회덤핑방지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2003년 춘계 학술발표대회, 2003. 5, pp. 138~139

- EU위원회는 조치의 확대에 대한 재심의 개시를 결정할 수 있음

## 마. 마우회덤핑 사례

### 1) 중국산 자전거 사례<sup>44)</sup>

- 1993년 중국산 자전거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이후 EU 역내 기업이 부품을 수입하여 자전거를 조립하기 시작하자 1996년 당시 EC위원회는 우회조사를 개시하고 자전거프레임에 대해 우회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음
- 위원회는 무역형태의 변경 및 타당한 사유 또는 경제적 타당성의 불충분의 요건과 관련, 완제품 자전거 수입이 반덤핑조치 이후 92% 감소한 반면, 주요부품인 자전거프레임의 수입은 139% 증가한 것은 분명한 대체효과로 보았음
- 위원회는 완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부품의 총가치 중 수입부품의 가치가 60% 이상을 구성해야 하는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부품의 원산지를 고려하였음
  -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자전거 부품은 EU가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모두 중국산으로 간주함
- 위원회는 기존 반덤핑관세의 피해구제효과에 대한 가격침해에 대해서는 역내 조립자전거의 판매가격과 덤핑하지 않은 중국산 자전거의 수출가격을 비교하여 평균 14.5%를 침해한 것으로 판정함
  - 수량침해의 경우 보다 포괄적 분석에 의해 완성품 자전거의 수입이 부품수입으로 부분 대체되었다고 판정함

44) 이재형, 「우회덤핑방지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2003년 춘계 학술발표대회, 2003. 5, pp. 139~140

### 3. 호주

- 호주는 1906년 반덤핑에 관한 법을 처음으로 입법화<sup>45)</sup>하였고, 케네디라운드 및 동경 라운드 협상의 결과에 따라 1975년 반덤핑조항을 개정, 1995년 WTO 출범 이후 등 지속적으로 반덤핑법을 개정하여 왔음
  - 현재의 호주의 반덤핑 근거법률에는 Customs Act 1901, Customs Tariff (Anti-Dumping) Act 1975, Customs Regulations 1926 (180, 181, and 181A), Customs Administration Act 1985이 있음
- 2013년 6월에는 호주의 반덤핑 법안 개정이 발효되어 새로운 덤핑방지 검토 전문가가 도입됨
  - 상계 대상인 정부지원금을 다루는 법 조항의 변경, 새로운 우회덤핑방지제도 등이 도입됨
  - 우회덤핑방지제도는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를 교묘하게 피하여 호주로 수입되는 특정 수입물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도입됨
    - 교묘한 행위는 호주 또는 제3국의 행위까지 포함
  - 우회덤핑방지제도는 덤핑방지관세 규정에서 정의하는 덤핑행위의 범위를 더욱 확대시켜 통관 적법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임
  - 호주 정부는 관세청에 반덤핑조치의 효율성을 평가할 부서를 신설하고 우회덤핑방지조치를 수행하도록 함

#### 가. 우회덤핑의 유형

- 개정된 법안은 4가지 유형의 우회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청이 이러한 우회활동을 포착할 경우 장관이 이를 공표하면 기존의 반덤핑조치는 우회덤핑방지조치로 전환 가능함
  - 반덤핑관세 부과가 예정되었던 수출국으로부터 수출된 물품이 호주에서 조립되고 전체 상품가치 중 수출국에서의 제조 비중이 상당부분을 차지할 경우<sup>46)</sup>

45) Industries Preservation Act 1906

- 수출국으로부터 호주로 수입시 반덤핑관세부과가 예정되었던 물품이 제3국으로 수출되어 조립되고 제3국에서 조립이 완료된 전체 상품가치 중 수출국에서의 제조 비중이 상당부분을 차지할 경우<sup>47)</sup>
- 수출국으로부터 호주로 수입시 반덤핑관세부과가 예정되었던 물품이 반덤핑관세부과가 없는 제3국으로 완제품 형태로 수출되어 호주에 다시 수출될 경우<sup>48)</sup>
- 수출국으로부터 호주로 수입시 반덤핑관세부과가 예정되었던 물품이 수출국내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출자를 통해 호주에 수출될 경우

#### 나. 우회덤핑 조사<sup>49)</sup>

- 덤핑우회방지 조치에 대한 개정 법안은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제품의 유사제품을 생산하는 호주 기업이 관세청장에게 우회덤핑방지 조사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반덤핑위원회에 조사를 수행하도록 요청함
  - 위원회는 20일 이내 해당 신청을 수락 또는 거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신청서에 충족되어야 하는 요구사항<sup>50)</sup> 및 우회행위 발생을 뒷받침하는 하나 이상의 합리적인 근거<sup>51)</sup>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은 거절됨
    - 신청이 거절되지 않으면 위원회는 해당 조사의 개시사실 및 조사 절차 등 관련 내용을 게시판에 공시하고 신청자에게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통지함

46) 예: 반덤핑관세부과조치가 내려진 중국 망치가 머리와 핸들이 각각 별도로 중국에서 수입되어 호주에서 제조되는 경우

47) 예: 중국 망치의 머리와 핸들이 각각 인도네시아로 수출되어 조립된 후 호주로 수출

48) 예: 중국에서 완전히 조립된 망치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후 다시 호주에 수출

49) Anti-Dumping Commission, Application for an anti-circumvention: Avoidance of Intended Effect of Duty-Guidelines for applicants, January 2014

50) 기존 반덤핑조치대상 물품의 명세, 기존 반덤핑조치 내용, 기존 반덤핑조치와 관련되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는 우회행위의 상세내용, 기존반덤핑조치에 대해 변경된 내용

51) 단순한 주장이 아닌 시장정보, 수출자와 수입자로부터 입수 가능한 상업서류(견적서, 인보이스, 제조공정설명서, 선하증권 등)

- 우회덤핑방지 조사가 착수되면 호주 기업, 수출기업, 무역조합 등 여러 이해당사자들은 의견 제안서를 제출할 기회를 갖게 됨<sup>52)</sup>
  - 이러한 의견제안서는 공시 후 40일 이내 제출되어야 함
  
- 이해당사자들이 제출한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 현장실사가 수행될 수 있으며 현장실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조사가 진행됨
  - 위원회가 작성한 서면조사 및 현장실사 보고서는 기밀정보를 제거한 상태로 공시될 수 있음
  
- 반덤핑위원회는 조사개시일로부터 100일 이내 반덤핑조치가 우회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내무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보고서는 우회덤핑행위의 발생과 관련한 위원회의 의견진술 및 그러한 사항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
  
- 내무부 장관(Minister of Home Affairs)은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기존조치를 유지할 것인지, 변경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최종결정할 수 있음
  - 내무부 장관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러한 사실을 관보나 호주 내 유통되는 신문상에 공표함
    -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공표를 위해 더 긴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음
  - 기존 조치를 변경하기로 결정한 경우 변경대상 물품, 국가, 수출자, 수출자와 관련된 변경된 요소 등을 특정하는 내용을 포함
  - 내무부 장관의 공표가 수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수출자에게 해당 공표사실 및 변경된 사항을 통지해야 함
  
- 기존 조치사항의 변경 여부에 대한 내무부 장관의 결정은 반덤핑재심패널(Anti-Dumping Review Panel)에서 재심 가능

52) 주호주한국대사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호주 수입규제[반덤핑] 대응 매뉴얼」, 2013. 3, pp. 15~16

- 이행당사자는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관세청장의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음

[그림 Ⅲ-1] 신청서 양식(B1236)

APPLICATION UNDER SECTION 269ZDBC OF THE *CUSTOMS ACT 1901* FOR AN ANTI-CIRCUMVENTION INQUIRY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269ZDBC(1) of the *Customs Act 1901* (Act), I request that the Anti-Dumping Commissioner conduct an anti-circumvention inquiry in relation to a notice published under subsections 269TG(2) or 269TJ(2) of the Act, in respect of the goods the subject of notice.

I consider that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assert that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circumvention activities have occurred:

- assembly of parts in Australia
- assembly of parts in a third country
- export of goods through one or more third countries
- arrangements between exporters

This application is made by a person representing, or representing a portion of, the Australian industry producing like goods, that considers one or more circumvention activities in relation to the notice have occurred.

I consider that it may be appropriate to alter the notice because of the circumvention activities.

**DECLARATION**

I believe that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pplication:

- provides reasonable grounds for the conduct of an anti-circumvention inquiry; and,
- is complet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Signature: \_\_\_\_\_

Name: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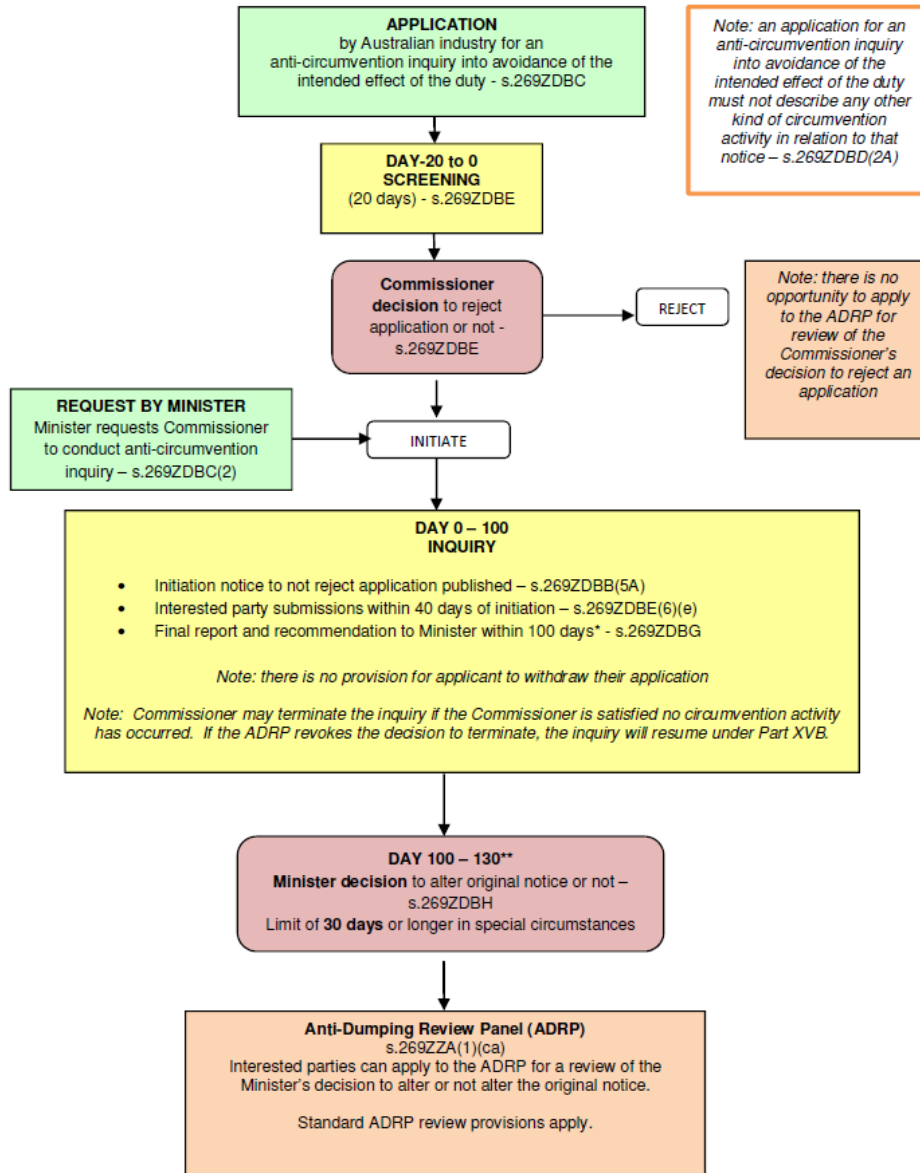
Position: \_\_\_\_\_

Company: \_\_\_\_\_

ABN: \_\_\_\_\_

Date: \_\_\_\_\_

[그림 Ⅲ-2] 호주의 우회덤핑판정 절차



자료: Anti-Dumping Commission

#### 4. 인도

- 인도는 반덤핑관세의 우회행위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회방지규정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 그룹에 합류
  - 인도의 반덤핑법(Anti-Dumping laws)은 반덤핑관세의 우회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제공하고 있음
  - 우회방지규정은 2011년에 발효된 재정법을 통한 1975 관세법(Customs Act, 1975)의 Section 9A에 sub-section으로 삽입되고, 이후 관련 규정은 2012년 세관고시(Customs Notification) No.6/2012의 형태로 골격을 갖추어 4개의 새로운 규정(25~28)이 우회덤핑방지를 위해 추가되는 두 단계를 걸쳐 도입됨
  
- 관세법 Section 9A의 규정들은 인도 중앙정부에 우회덤핑행위를 발견한 경우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특히, 관세법 9A조 1A에서는 인도 중앙정부가 요청에 따라 부과된 반덤핑관세의 우회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품이나 해당 국가로부터 수입된 경우 반덤핑관세가 확대되어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가. 우회덤핑행위의 유형 및 요건

- 인도의 우회방지규정에 따른 우회덤핑행위는 3가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음
  - 반덤핑 부과대상 제품이 미조립, 미완성이나 불완전한 상태로 인도로 수입되어 인도 내에서 조립, 마무리 또는 완성되는 경우
    - 반덤핑 부과 대상국가로부터 미조립, 미완성 또는 불완전한 상태로 반덤핑관세 부과대상국이 아닌 제3국에 수출되어 조립, 마무리 또는 완료공정이 수행된 제품이 다시 인도로 수입되는 경우도 포함됨
    - 조립, 마무리 또는 완료 공정은 반덤핑관세 부과 직전이나 그 이후에 시작되거나 증가되어야 함
    - 조립 및 완료 공정에 따른 인도 또는 제3국에서 부가된 가치가 완성된 제품의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 미만이어야 함

- 부가가치의 계산에 있어 지적재산권, 로열티, 기술노하우 수수료 및 컨설팅 수수료와 관련되어 지불된 금액은 고려하지 않음
-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으로 통지된 국가로부터 수입된 제품의 형태나 외양에 사소한 변경을 통해 반덤핑관세를 회피하는 경우
  -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제품의 품명이나 규격 등을 변경하여 수입되고 그러한 변경이 품목분류의 변경을 가져온 경우라도 형태상 사소한 변경을 가져온 것이라면 부과된 반덤핑관세의 우회행위로 간주됨
-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제품이 무역거래 관행이나 거래 형태의 변경을 통해 제3국을 통해 인도로 수입되는 경우 반덤핑관세의 우회행위로 간주함
  - 변경된 무역거래 형태가 반덤핑관세의 회피 이외에는 정당성 및 경제성 등이 없어야 하고 제품의 가격이나 품질 측면에서 반덤핑관세의 구제효과가 훼손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함

## 나. 우회덤핑 조사

### 1) 우회행위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 개시

- 인도 상공부 반덤핑총국(DGAD, Directorate General of Anti-dumping & Allied Duties)<sup>53)</sup>은 직권에 의해 또는 국내 산업에 의한 요청에 따라 우회행위의 존재 및 이에 따른 효과를 결정하는 조사를 개시할 수 있음
  - 반덤핑총국은 국내 산업에 의한 서면신청서 접수 시 반덤핑관세의 우회행위의 존재를 판단하는 조사를 개시할 권한이 있음<sup>54)</sup>
    - 서면신청서는 우회방지 조사의 개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포함하여야 함

53) 상공부 내 독립된 기능부서로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와 그 정도를 조사, 산업피해를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중앙정부에 권고(한국무역협회 뉴델리지부, 「인도 반덤핑규제제도 및 절차」, 2014. 11, p. 3)

54) Rule 26 of the Anti Dumping Rules, 1995

- 또한 세관장이나 기타 정보원으로부터 부과된 반덤핑관세의 우회행위를 지목하는 상황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입수된 경우에는 반덤핑총국이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음
  - 반덤핑총국은 부과된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물품의 수입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반덤핑관세의 우회행위의 혐의를 결정하는 조사를 시작할 수 있음
- 조사는 12개월 이내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반덤핑총국에 서면으로 기록된 조사개시일로부터 18개월 이상 소요될 수 없음
- 반덤핑총국은 조사대상 수출국 정부에 이러한 사실을 조사개시 전에 통보해야 함

## 2) 우회행위의 결정

- 반덤핑총국은 반덤핑관세에 대한 우회행위가 있거나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국가 이외 제3국가를 원산지 및 수출지로 하는 제품의 수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추천할 수 있음
- 반덤핑총국은 우회행위의 최종결정에 대해 그 내용을 관보에 공표해야 함
  - 반덤핑관세의 부과는 조사개시일로부터 소급되어 적용될 수 있음<sup>55)</sup>
  - 중앙정부<sup>56)</sup>는 조사당국의 추천에 따라 조사 개시일로부터, 또는 반덤핑총국의 추천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에 반덤핑관세를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음

## 3) 우회의 재심

- 반덤핑총국은 지속적인 관세 부과와 필요성에 대해 재심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sup>57)</sup>
- 재심은 반덤핑총국 자체적으로 또는 조치가 부과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재심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이해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 재심은 재심 개시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수행되어야 함

55) Rule 27 of the Anti Dumping Rules, 1995

56) 재무부 중앙관세위원회 산하 세금조사실(반덤핑관세의 부과와 징수업무 담당)

57) Rule 28 of the Anti Dumping Rules, 1995

## 5. 중국

- 중국은 세계 최대 반덤핑 피제조 국가이며 수출우대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일본, 한국, 홍콩 등의 동아시아 국가의 입장과는 달리 우회덤핑방지에 찬성하고 있음<sup>58)</sup>
  - 중국 제품에 대하여 반덤핑조사를 개시한 국가는 미국 및 EU 등의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들까지 세계 여러 국가에 널리 분포되어 있음
  - 덤핑조사를 받은 상품도 화학공업, 제련 및 철강관련 산업 등 수천 가지에 달함
  - 중국 상품은 외국에서 집중적으로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외국 상품은 중국시장에서 덤핑 판매됨에 따라 중국 국내 산업에 대한 위기를 불러일으키자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구제책 마련이 요구되었음<sup>59)</sup>
  
- 중국은 우회덤핑의 개념을 비교적 일찍부터 도입하여 비록 선언적인 내용이지만 1997년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례 제정 시 관련 규정을 두었음<sup>60)</sup>
  - 그러나 반덤핑조례 제55조에서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국무원 관련 부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반덤핑조치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미국 등 반덤핑법제도에서는 절차적·실체적 규정을 상세히 두고 있으나 중국의 반덤핑조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절차적·실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sup>61)</sup>
  - 이후 중국의 대외개방, WTO 가입과 더불어 외국산 제품이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는 중국으로 대거 수입되어 경쟁을 벌이고, 또한 세계 최대의 해외자본 투자 유치국이 되면서 2001년 말 개정 반덤핑조례 제정

58) 이승영, 「중국의 반덤핑산업피해조사에 관한 연구」,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2004. 4, p. 131

59) 이준영·이상혁·마광, 「中國의 反덤핑制度 運營에 관한 研究」, 『계간 무역규제』,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2002. 1, pp. 65~66

60) 이승영, 「중국의 반덤핑산업피해조사에 관한 연구」,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2004. 4, p. 131

61) 이준영·이상혁·마광, 「中國의 反덤핑制度 運營에 관한 研究」, 『계간 무역규제』,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2002. 1, pp. 100~101

- 중국에 덤핑관련 제품을 수출하여 제재를 받거나 받을 개연성이 있는 관련 해외 기업이 중국에 공장을 설립하여 상품을 조립하거나 제3국을 통해 상품을 조립하며 후개발상품을 통해 중국시장에 대거 수출하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sup>62)</sup>

- 2003년 10월에 제정된 개정 피해조사규정은 우회덤핑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음<sup>63)</sup>
  - 중국은 2002년 말 산업피해조사규정을 제정하면서 우회덤핑의 유형, 조사시 고려사항, 방지책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켜 외국상품에 대해 우회덤핑 조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 중국이 개정피해조사규정에서 우회덤핑 부분을 제외한 이유는 WTO 반덤핑협정에 관련 내용이 없어 제외시켰거나, WTO 반덤핑협정 개정협약에 있어 중국의 제안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또는 개정이 예상되는 반덤핑조례에 포함시키기 위해 제외했을 가능성이 있음<sup>64)</sup>

#### 가. 우회덤핑행위의 유형 및 요건<sup>65)</sup>

- 기존 규정의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의 피해조사규정은 우회덤핑행위의 유형을 5가지로 나누고 있음
  - 반덤핑관세 징수대상제품을 제3국에서 조립 또는 가공해서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
  - 반덤핑관세 징수대상제품을 형식 변경 또는 가공하여 반덤핑관세를 징수하지 않는 관세세목에 포함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
  - 반덤핑관세 징수대상제품의 부품, 부분품을 중국에 수출하여 중국에서 조립하는 경우
  - 반덤핑관세 징수대상제품을 발전시켜 후개발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
  - 기타
    - 미국이나 EU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음

62) 이승영, 「중국의 반덤핑산업피해조사에 관한 연구」,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2004. 4, pp. 131~132

63) 이승영, 「중국의 반덤핑산업피해조사에 관한 연구」,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2004. 4, p. 132

64) 이승영, 「중국의 반덤핑산업피해조사에 관한 연구」,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2004. 4, p. 134

65) 이승영, 「중국의 반덤핑산업피해조사에 관한 연구」,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2004. 4, pp. 132~133

- 또한 피해조사규정은 우회덤핑수출을 확정할 때 고려요소로 7가지를 두고 있음<sup>66)</sup>
  - 반덤핑조사 개시 전 또는 개시 후 규칙에 규정된 우회덤핑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 덤핑대상국 또는 제3국에서 수입된 반덤핑관세 징수대상 제품의 부품 가치가 해당 물품에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 덤핑대상국 또는 제3국에서의 수입된 제품 중 반덤핑관세 징수대상 원재료의 가치가 해당 제품 전체 원재료 가치에서 비교적 큰 비율을 점하는 경우
  - 반덤핑관세 징수대상 제품을 조립 또는 가공한 제품의 가치 증가분이 조립 또는 가공된 제품 가치의 비교적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 반덤핑조치의 회피행위가 반덤핑관세 징수의 효과를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 반덤핑관세 징수대상 물품의 덤핑과 피해사실
  - 기타요소
  
- 반덤핑조례가 우회덤핑방지를 위한 원칙적 선언만 담고 있는 데 비해 구 피해조사규정은 우회덤핑행위 유형과 조사시 고려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 그러나 계량적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비교적 큰 비율 또는 비교적 적은 부분 등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 나. 우회덤핑 사례<sup>67)</sup>

- 2000년 한국,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을 원산지로 하는 이염화메탄 반덤핑 예비판정에서 우회덤핑을 지적함
  
- 중국의 수입상과 외국수출기업이 상품명 위조수입, 제3국을 통한 수입으로 원산지 회피(다국적기업 간 내부거래를 통한 대중 수출), 제3국에 설립된 본사와 명의를 달리하는 자회사를 통한 위탁수출의 방식이 현저하게 발견되고 있다고 판정하였음

66) 김여선, 「中國의 對韓 反덤핑 規制에 對한 對應論理開發에 關한 研究(下)」, 『성균관법학』, 제17권 제3호, 2005. 12, pp. 516~517

67) 김여선, 「中國의 對韓 反덤핑 規制에 對한 對應論理開發에 關한 研究(下)」, 『성균관법학』, 제17권 제3호, 2005. 12, p. 517

##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 1. 국제비교

#### 가. 개요

- WTO에서 우회덤핑방지규정 도입 문제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어 왔지만 현재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고 있음
- WTO 논의에서 우회덤핑의 규제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 우리나라는 우회덤핑방지제도를 법으로 규정화하고 있지 않음
  - 현재의 우리나라 규정으로는 수출자가 의도적으로 우회덤핑을 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
- 그러나 미국, EU,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우회덤핑방지규정이 법에 마련되어 있고 우회덤핑의 유형 및 요건, 조사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조사대상 국가의 우회덤핑방지제도는 큰 틀에서는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에 대해서는 다소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음
- 아래에서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조사대상국가의 우회덤핑방지제도 근거규정, 우회덤핑의 유형 및 요건 등 제도의 일반적인 부분과 우회덤핑판정 절차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봄

#### 나. 우회덤핑의 유형 및 요건

- 조사대상 국가 모두 우회덤핑을 규제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 호주, 인도는 관세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그 하위 법률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EU 및 중국의 경우 각각 반덤핑 규칙과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례에 의해 우회덤핑 방지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미국은 관세법 등 반덤핑관세규정을 근거로 덤핑행위의 범위를 확대시킨 다른 조사 대상 국가와 달리 우회덤핑에 대한 별도의 법을 규정하고 있음
- 조사대상 국가들에서 우회덤핑방지규정을 근거로 규정하고 있는 우회덤핑의 유형은 서로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임
- 조사대상국가내에서 조립 및 제3국에서의 조립하여 완성, 해당물품의 사소한 변경이나 가공을 공통으로 규정하고 있음
  - EU, 인도, 호주에서는 거래 형태의 변경을, 이 중 EU와 호주에서는 제3국 경유 역시 우회덤핑의 유형으로 포함하고 있음
  - 특히, 미국과 중국에서는 후개발물품을 추가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우회덤핑의 요건과 관련, 조사대상 국가 모두 반덤핑조치 대상국의 물품이나 부품의 가치가 상당 비중을 차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곧 조사대상 국가 및 제3국에서 부가된 가치가 완제품에서 적은 부분을 차지하도록 규정함을 의미
  - EU, 인도, 중국은 조사개시(인도는 반덤핑관세부과) 직전이나 이후 조립이 시작되거나 수입이 증가된 경우와 반덤핑관세의 구제효과의 훼손을 공통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미국의 경우 반덤핑관세명령 대상 물품과 동일부류 또는 동일종류의 물품을 별도로 언급하고 있음
    - 세부적으로는 EU나 다른 국가들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미국이나 제3국에 대한 투자수준, 연구개발의 수준, 생산설비의 범위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물품의 사소한 변경의 문제는 HS 코드와 관계없이 동종물품에 대한 정의를 기준으로 우회덤핑을 규제하고 있음

〈표 IV-1〉 우회덤핑 유형 및 요건 국제비교

우리나라	미국	EU	호주	인도	중국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 U.S.C. §1677 j</li> <li>- 19 C.F.C. Part 351.22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U 반덤핑규칙 384/9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ustoms Act 1901</li> <li>- Customs Tariff (Anti-Dumping) Act 1975</li> <li>- Customs Regulations 1926</li> <li>- Customs Administration Act 198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ustoms Act 1975 Section 9A</li> <li>- Rule 26 of the Anti Dumping Rules, 199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례</li> </ul>
우회덤핑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국 우회(미국에서 조립·완성)</li> <li>- 제3국 우회(제3국에서 조립·완성)</li> <li>- 미세변경물품 및 후개발물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소한 변경</li> <li>- 제3국을 통한 환적</li> <li>- 판매경로·형태의 제편성</li> <li>- EU 또는 제3국에서의 조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주에서 조립</li> <li>- 제3국에서 조립</li> <li>-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li> <li>- 수출국내 다른 수출자 통한 수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 및 제3국에서 조립, 마무리, 완성</li> <li>- 사소한 변경</li> <li>- 무역거래형태의 변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국에서 조립·가공</li> <li>- 징수대상 물품의 변경·가공</li> <li>- 중국에서 조립</li> <li>- 후개발제품</li> <li>- 기타</li> </ul>
우회덤핑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부류·동일종류 물품</li> <li>- 반덤핑관세명령적용대상 국가, 적용대상물품(부품, 원료)</li> <li>-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공정</li> <li>- 반덤핑관세적용대상국의 물품(부품, 원료)의 가치가 전체 가치에서 중요 비율 차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개시 이후 또는 직전에 조립행위 개시 또는 상당한 수입의 증가</li> <li>- 반덤핑조치대상국의 부가가치가 60% 이상</li> <li>- 반덤핑관세의 구제효과 훼손 및 덤핑의 증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국에서의 제조비중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덤핑관세부과 직전이나 그 이후 조립이 시작되거나 수입 증가</li> <li>- 인도 및 제3국에서 부가된 가치가 완성제품 가격에서 35% 미만</li> <li>- 반덤핑관세 회피 외 정당성 및 경제적 타당성 부재</li> <li>- 반덤핑관세 구제효과 훼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덤핑조사개시 전 또는 후 발생</li> <li>- 덤핑대상국 및 제3국의 부품(원재료) 가치가 제품에서 큰 비율 차지</li> <li>- 조립·가공 후 가치 증가분이 전체 제품에서 적은 부분 차지</li> <li>- 반덤핑관세징수 효과의 현저한 감소</li> </ul>

### 다. 우회덤핑판정 절차

- 우회덤핑조사는 조사대상 국가 모두 해당 국내 산업이 조사관련 당국에 신청함으로써 조사가 개시됨
  - 중국은 2003년에 개정된 산업피해조사규정에서 우회덤핑 관련 조문이 삭제되었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회덤핑조사는 직권으로 개시 가능하고, 조사개시 여부 결정 후에는 공시 및 수출국정부와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EU의 경우 직권으로 조사개시가 불가능하며 관세당국에 우회덤핑 혐의의 수입물품을 등록하게 하거나 보증금 요구를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회덤핑조사가 개시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서면조사 및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우회덤핑행위의 판정이 이루어짐
  - 미국은 상무부가 자료 수집을 위해 관련 당사자들에게 질문지를 송부하며,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 후 예비판정을 내리고 ITC의 권고에 따라 최종판정함
  - EU는 회원국 관세당국의 지원을 받아 위원회가 조사를 수행되며 9개월 내 위원회의 반덤핑조치 확대 제안에 따라 EU이사회가 단순다수결로 채택함
  - 호주는 조사가 착수되면 호주 수출기업, 무역조합 등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제안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반덤핑위원회는 100일 이내 내무부 장관에게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여 내무부 장관이 조치에 대해 최종결정함
  - 인도의 경우 조사를 수행한 반덤핑사무국의 판단에 따라 중앙정부에 반덤핑관세부과를 추천함
  
- 조사대상 국가들의 우회덤핑판정에 따른 우회덤핑방지조치는 모두 반덤핑관세부과조치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EU와 인도의 경우에는 해당 조치의 소급 적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EU는 우회덤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입자는 이에 대한 증명서의 교부를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추가적으로 조사대상국가 모두 반덤핑조치와 마찬가지로 우회덤핑방지조치에 대해

〈표 IV-2〉 우회덤핑판정 절차 국제비교

	미국	EU	호주	인도
조사 신청	국내 산업이 상무부에 신청	EU 역내 산업이 위원회에 신청	호주의 유사제품 생산기업이 관세청장에게 신청 - 관세청장은 반덤핑위원회에 조사수행 요청	국내 산업이 상공부 반덤핑사무국에 서면요청
조사 개시	45일 이내 조사개시 여부 결정 후 공시 - 직권조사 개시 가능	자문위원회와 협의 후 조사개시 - 직권으로 조사개시 불가능 - 수입물품 등록 또는 보증금 요구 지시	반덤핑위원회는 20일 이내 조사개시 여부 결정 후 공시 및 신청자에게 통지	- 수출국정부에 조사개시 통보 - 상공부 반덤핑사무국 직권으로 조사개시 가능
조사 단계	- 질문지 송부 - 제출자료 실사	회원국 관세당국의 지원받아 9개월 내 완료	- 이해당사자의 의견제안서 제출 - 현장실사 및 서면조사 - 100일 이내 내무부장관에게 서면보고서 제출	12개월 이내 조사
판정	- 상무부 예비판정 후 공시 및 ITC 통보	위원회 제안에 따라 EU이사회가 단순다수결로 조치 채택	내무부장관의 최종결정 후 공시 및 수출자에게 통지	반덤핑사무국의 판단 및 추천에 따라 중앙정부가 우회행위 결정 및 공시
	- 상무부 최종판정 후 공시	반덤핑조치의 확대 적용 - 조사개시일로부터 소금 적용 - 수입자는 우회덤핑에 해당하는 지 않는다는 증명서의 교부를 관세당국에 요청 가능	- 기존 조치 유지 또는 변경된 관세의 부과 - 내무부장관의 결정에 대해 반덤핑재심페널에서 재심 가능	반덤핑관세의 확대 적용 - 조사개시일로부터 소금 적용 가능 - 반덤핑관세부과 지속 필요성에 대해 반덤핑사무국 자체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도래 시 이해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재심 가능
우회덤핑방지 조치	반덤핑관세명령의 적용 - 상무부의 결정에 대해 국제통상법원(CIT)에 이의제기 가능			

서도 재심 가능하며, 특히 미국의 경우 우회덤핑조사 결정에 대해 CIT(국제통상법원)에 이의제기할 수 있음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음

## 2. 시사점

- 가서명된 중국과의 FTA가 향후 발효되면 우리 물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며 국내에서도 중국 물품에 대한 반덤핑조사뿐 아니라 원산지 세탁을 통한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우리 수출품에 대한 상대국 규제뿐 아니라, 상대국 제품에 대한 국내 규제도 반덤핑 조사, 우회덤핑조사 등의 형태로 늘어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최근 1년여 사이에 중국, 말레이시아, 일본, 태국, 미국, 대만, 인도 등 15개국 9건(8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을 조사하고 있음
    -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이미 반덤핑 관세가 부과됨
  
- 과거 우리 정부의 입장은 반덤핑협정의 개정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조사당국의 재량을 축소하여 부당한 조사와 판정을 막을 것인지에 초점을 두어왔음
  - 물론 부당한 조사와 판정을 막고자 하는 입장은 지금도 유지되어야 할 기초임
  - 그러나 조사당국에 대한 다양하고 엄격한 부과 요건이 우리 조사당국이 FTA 체제 확산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미래의 반덤핑 조사에 대하여 불리한 상황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또는 우리의 현실이 이러한 새로운 요건을 반영하는데 곤란한 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제는 조사를 받는 입장과 함께 조사를 하는 입장의 양 방향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음

## 가. 정책 방향

### 1) 수입 측면

- 우회덤핑행위는 현재 글로벌 경제하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세계 각국은 덤핑과 연계된 측면에서 반덤핑법에 우회덤핑제도를 포함시키고 있음
  - 우회덤핑은 기존 관세체계 내에서 부과되는 반덤핑조치 등을 회피하는 행위이므로 원산지규정을 포함한 관세체계의 범위 내에서는 규제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함
  - EU와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WTO반덤핑협정의 근거 없이 우회덤핑 방지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한계의 존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우회덤핑은 불공정무역행위의 하나이기 때문에 별도로 독립된 우회덤핑방지규정을 제정할 필요성을 고려해볼 수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 등 선진국이 일방적으로 우회덤핑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 WTO협정 위배라는 입장을 취하여 왔으므로 우회덤핑방지협상의 타결 전 동 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음
  - WTO에서 우회덤핑규정이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회덤핑방지규정을 법규에 포함시키는 것은 다소 성급한 조치일 수 있음
  - 또한, 역외국으로부터 반덤핑우회의 목적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해외투자를 저해할 수도 있음
  
- 그러므로 장기적으로는 WTO에서의 우회덤핑관련 규정의 제정 방향에 따라 우리나라도 그에 따른 우회덤핑 규정의 제정을 통해서 우회덤핑에 대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최근 WTO가 우회덤핑방지제도를 정식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현재로서는 우회덤핑방지협상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미

국, EU, 호주 등의 우회덤핑규정 내용 및 운용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 준비 하면서 동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WTO반덤핑협정상 우회덤핑규정의 도입문제를 떠나서 우리나라도 미국, EU 등과 같이 반덤핑조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등에 우회덤핑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우리나라는 반덤핑과 관련, 무역위원회의 조사 개시 및 직권조사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두고 있음
  - 따라서 우회덤핑으로 볼 수 있는 행위들도 규정에 포함시키는 등의 보완 필요

## 2) 수출 측면

-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수입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나라이며 우리나라에 대해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들 대부분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나라들임
  - 글로벌 금융위기 후 세계 각국이 수출 증대를 통한 경기 회복을 위해 다수의 FTA를 체결했지만, 동시에 자국 산업의 보호라는 취지로 수입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의미<sup>68)</sup>
  - 실제 우리 기업들의 일본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 신청 건수가 늘었으며, 같은 맥락에서 중국에서 우리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늘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미국이나 EU 등의 경우 우리 수출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수입규제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회수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기업들은 최근 부품업체와 공동 진출해 부품 현지생산을 늘리는 수직계열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EU로부터 우회덤핑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음

68) 최근에도 각국은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관세장벽을 낮추려는 노력을 펼치는 한편,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FTA체결 이후 다양한 수법으로 발생되고 있는 우회덤핑에 대한 명확한 규정의 확인과 대응 방안의 모색이 필요해 보임
- 우회덤핑 방지제도가 WTO에 공식 채택될 경우 미국과 EU뿐 아니라 중남미, 동남아 등 나머지 지역 국가들의 우회덤핑규제도 증가할 수 있음
  - WTO의 우회덤핑방지제도가 도입되면 동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우회덤핑 제소요건 강화 등의 요구를 통해 제소 건수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제3국에서의 우회수출이 아닌 현지시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완제품에 대해서는 우회덤핑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대응이 요구됨<sup>69)</sup>
    - WTO가 도입하게 될 우회덤핑방지제도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현지화 전략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음

#### 나. 우회덤핑방지 규정 측면

- 주요국들의 우회덤핑방지규정을 통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각 국가들에서 규정하는 우회덤핑의 개념이 종전보다 훨씬 넓어지고 그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우회덤핑규정(Anti-circumvention rule)은 이미 미국이 1987년, EU는 1988년에 국내법에 도입하였음
  - 미국의 경우 1994년 말 관세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회덤핑 여부는 단순히 완제품과 수입부품의 가격차이로 결정되었음
  - 이제는 제3국은 물론 미국현지에서 생산되는 완제품의 조립 또는 제조과정이 단순하거나 중요하지 않고, 수입부품이 완제품에서 상당할 경우에는 우회덤핑으로 간주됨
  - EU도 EU집행위원회는 역내외에서 단순조립을 통한 반덤핑 우회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함

69) 기업이 제3국에 생산설비를 설립하는 데에는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회피하려는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비용의 증가, 소비자 기호의 변화, 환율변동 등의 요소도 원인일 수 있으며, 수출목적지에 근접한 제3국이거나 FTA를 체결한 국가에 생산설비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혜적 접근이 가능하므로 이윤창출의 기회일 수 있음

- 개정된 규정에서는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EU내 또는 제3국에서 단순 조립·생산한 제품을 대상으로 우회덤핑 행위를 신속하고 폭넓게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앞에서 살펴본 국제비교와 조사대상 국가들의 우회덤핑 사례를 통해 드러난 우회덤핑 판정기준의 몇 가지 상세한 이슈들은 조사관련 당국이 우회방지규정을 자의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인정되고 있음
  - 미국 및 EU 사례에서의 제품의 사소한 변경의 범위 및 수입부품의 가치 판단 문제가 있음
    - EU의 경우 전체 사용부품 중 반덤핑조치 대상국가로부터의 수입부품의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를 우회덤핑 대상으로 판단
    - 미국은 반덤핑조치 대상국가로부터의 우회덤핑 판단의 적용 기준은 기타 국가로부터 구매한 부품가치뿐만 아니라 직접생산비, 판매관리비, 이윤까지 가산한 최종물품의 가치로 판단함
  - 우회덤핑제품의 정상가격을 계산하기 위한 동종 및 유사물품의 해석 문제가 있음
    - 유사상품에 대하여 확립된 정상가격이 덤핑을 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음
    - 또한, 부품 단독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도 정상가격의 계산이 문제가 됨
  - 우회행위에 대한 반덤핑 관세의 산업구제효과가 훼손되고 있는가의 여부 및 제3국을 통한 부품이나 원재료의 판매경로와 FTA와의 관계 등 무역형태의 변화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우회덤핑방지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우회덤핑조사 및 판정 절차도 과거에 비해 간편해지고 있어 우회덤핑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우회덤핑 제소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 우리나라 기업이 해당 국가들에서 우회덤핑 혐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각 국가별로 상이하게 운영 중인 반덤핑 및 우회덤핑방지제도의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됨
  - 먼저 우리나라의 우회덤핑 피해사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그리고 산업별 구조 등 분석을 통해 해외 진출한 현지공장이 단순조립의 형태가 아닌 중요한 부품 등을 현지에서 가공, 생산해야 하는 식의 대응이 필요함
- 우리나라 역시 우회덤핑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sup>70)</sup>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 WTO 반덤핑협정 내에서의 반덤핑제도의 운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우회덤핑을 의미하는 사소한 변경물품을 반덤핑조치 대상물품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반덤핑조사단계에서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해석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덤핑의 우회 사례를 보면 가격약속의 위반행위가 대부분 존재하고 있으므로 가격약속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원산지규정의 경우 수출자가 의도적으로 원산지를 회피함으로써 우회덤핑을 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반덤핑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품의 추가가공은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 등 원산지 규정의 적극적인 적용도 요구됨

---

70)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우회덤핑의 규제뿐만 아니라 개도국에 의한 우회수출도 문제되고 있으며 원산지 회피 등을 통해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고 있음

## 참고문헌

- 권희정, 「WTO 반덤핑협정의 우회덤핑규제 규정 도입 필요성」,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김만길, 「FTA에 따른 우회덤핑과 원산지규정」, 『관세학회지』, 2014. 5.
- 김여선, 「중국의 대한 반덤핑 규제에 대한 대응논리개발에 관한 연구(하)」, 『성균관법학』 제17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2005. 12.
- 산업연구원, 「WTO체제하에서의 미국 및 EU 반덤핑법제의 분석」, 1998. 7.
- 이경화·조유미, 「우리나라에서의 우회적 덤핑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법학연구』 제19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 이승영, 「중국의 반덤핑산업피해조사에 관한 연구」, 『계간 무역구제』 제14호,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2004. 4.
- 이준영·이상혁·마광, 「中國의 反덤핑制度 運營에 관한 研究」, 『계간 무역구제』,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2002. 1.
- 이재형, 「우회덤핑방지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2003년 춘계 학술발표대회, 2003. 5.
- 정재호·이재민,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제도 활용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12.
- 주호주한국대사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호주 수입규제(반덤핑) 대응 매뉴얼』, 2013. 3.
- 채형복, 「유럽연합(EU)의 원산지제도」, 『계간 무역구제』, 2001. 10.
- 한국무역위원회, 「각국 무역구제제도의 현재와 미래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2007. 7.
- 한국무역협회 뉴델리지부, 「인도 반덤핑규제제도 및 절차」, 2014. 11.
- Anti-Dumping Commission, “Application for an anti-circumvention: Avoidance of Intended Effect of Duty – Guidelines for applicants,” January 2014.

Edwin Vermulst, "EU Anti-Circumvention Rules & Practice," Seminar on trade defense measures, 2012. 4.

Anti-Dumping Commission(호주)

: [www.adcommission.gov.au/system/anti-circumvention/applications.asp](http://www.adcommission.gov.au/system/anti-circumvention/applications.asp)

관세연구 14-04

**주요국의 우회덤핑방지제도 비교 연구**

---

---

2014년 12월 23일 인쇄

2014년 12월 30일 발행

저 자 정재호 · 이민선 · 양지영

발행인 옥동석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318-774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TEL: 044-414-2114 (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고려씨엔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ISBN 978-89-8191-768-5

---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